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

서 문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던 대미 통상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8월 7일부터 미국은 국가별로 다른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물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세율이 부과되는 외국의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고세율 국가로 판정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미 수출전략의 핵심입니다.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 대미 수출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식품류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를 정리한 실전형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추가하여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당국에 비특혜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를 모아 제작한 「제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 편이 원산지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임주연

CONTENTS

Ⅰ. 미국 관세정책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09
02.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 1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12
04.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13

Ⅱ.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우리기업 직접 신청건

Case 01. 에틸 락테이트 18
Case 02. 스프레이 용기 20
Case 03. OLED 모듈 22
Case 04.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 24
Case 05. 직접식 감지 컨트롤러 26
Case 06.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28
Case 07.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30
Case 08. 파워 어댑터 세트 32
Case 09.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34
Case 10. 화장용 브러쉬(1) 36
Case 11. 화장용 브러쉬(2) 38
Case 12. 골프공 40
Case 13.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42
Case 14. 버터플라이 밸브 44
Case 15.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47
Case 16. 레코드판 50
Case 17. 집적회로 52
Case 18. 인스턴트 라면 54
Case 19. 히트 펌프 57
Case 20. 전자식 공압 요추 지지 시스템 59
Case 21. 배추김치 62
Case 22. 기계 장비용 유압 실린더 65
Case 23. 정맥 주사용 주사제 67
Case 24.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69
Case 25.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 71

CONTENTS

연결공정 제품(한국산 원재료 사용 또는 일부 공정 수행)

Case 01. 메인 빔 모듈 어셈블리 76
Case 02. C형 락킹 플라이어 80
Case 03. STP 바지선 82
Case 04. 싱크대 하부설치 정수기 세트 84
Case 05. 플라스틱 운송 박스 86
Case 06. 리튬이온 배터리 팩 88
Case 07. 천연흑연 음극 활성 물질 90
Case 08. 전기식 정수기 교체용 필터 92
Case 09. 구리 파이프 94
Case 10. 정수 필터 탱크 및 교체용 정수 필터 96
Case 11. 전기 커플러 98
Case 12. 정맥주사 투여 세트
정맥주사 연장 세트, 튜브 전송 세트 100
Case 13. 가정용 정수 시스템 필터 카트리지 103
Case 14. (일회용, 비멸균) 플라스틱 컵 105
Case 15.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 107
Case 16. 가정용 전기 정수기 109
Case 17. 유리섬유 줄자 112
Case 18. 스마트 타겟 114
Case 19. 아기 인형 세트 116
Case 20. 특수카메라 118
Case 21. 혈당 측정기 120
Case 22. 하드라인 케이블 123
Case 23. LED 조명기구 125
Case 24. 모니터 128
Case 25. 세탁기/건조기용 조명 131
Case 26. 반려동물용 물티슈 133
Case 27. 스퍼터링 타겟 135
Case 28. 아기용 물티슈 137
Case 29. 유체 단 139
Case 30.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142

부 록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146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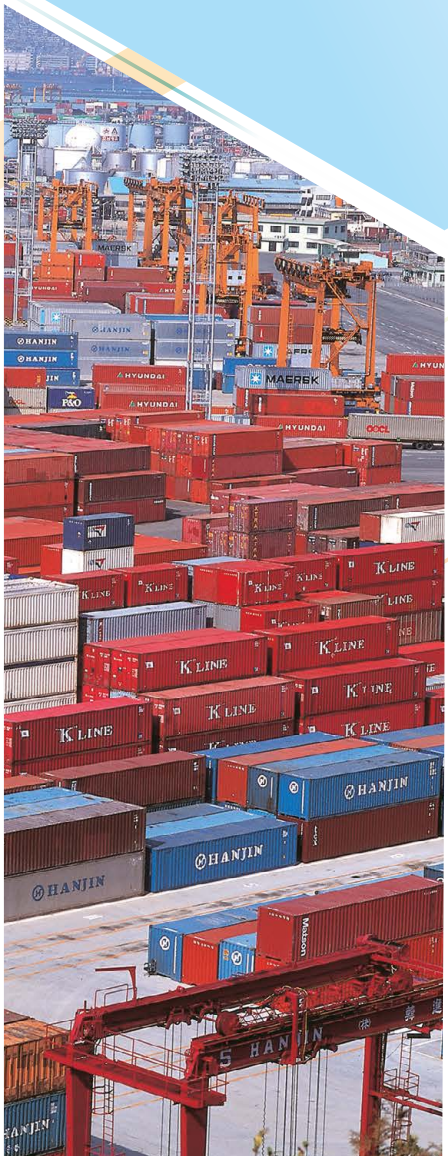
HANJIN
MAERSK
HYUNDAI
K LINE

I.

미국 관세정책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09

02.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 1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12

04.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13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현 황

-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연이어 시행 중임
- 미 정부는 ❶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따른 상호관세와 ❷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운영

구 분	근거	대상	세율	시 행 일
상호 관세	**국제비상 경제권한법 등**	모든 국가	10%	04.05.
			국가별 차등 (한국 15%)	08.07. (10% → 국가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
품목 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	① 철강, 알루미늄 및 그	50% (함량과세)	03.12. 06.04. 세율 상향 (25% → 50%) 06.23. 세탁기 등 추가 08.18. 428개 추가
		②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25%	04.03. (자동차) 05.03. (부품)
		③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50% (함량과세)	08.01.
		④ 목재 및 그 파생제품	목재 10% 가구 25%	10.14. (26.1.1 가구 세율 상향 예정)
		⑤ 중대형 차량 및 부품, 버스	중대형 차량 ·부품 25% 버스 10%	11.01 (예정)

관세부과 체계

- 기본 또는 한-미 FTA 세율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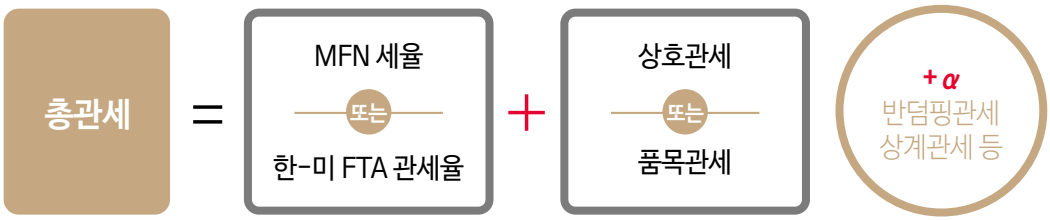

02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

Check Point

- 미국의 관세 부과 내용은 미국의 품목번호(HTSUS)로 발표됨
  - ☞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 국이 달리 운영하므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관세청이 발표하는 연계표를 참고하여 부과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품목관세 부과 품목은 미 상무부가 직권 또는 자국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고시할 수 있음
  - ☞ 상무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부과대상 품목이 상시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출 기업은 지속적인 확인과 주의가 필요

품목관세 부과대상 및 세율

- **2025년 추가된 부과대상 : 미국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공개되며, 품목군 전체가 아닌 공고한 품목만 품목관세 대상**

  1)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
  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3)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4) 자동차(승용차 및 경트럭) 및 특정 자동차 부품
  5) 목재 및 파생제품
  6) 중대형 차량 및 부품, 버스

  ※ 대미 수출기업이 품목관세 부과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이 품목관세 부과대상으로 발표한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연계하고 한글 품목을 추가한 품목분류 연계표를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 공개 중

- **세율**

  1) 철강·알루미늄·구리 :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가치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그 외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

〈제품 구성비율〉		〈적용 세율〉
10%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MFN or 한-미 FTA세율 + 품목관세 50%
90%	철강·알루미늄·구리 非함량	MFN or 한-미 FTA세율 + 상호관세 15%

2)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MFN or 한-미 FTA세율 + 품목관세 25%

- 특정 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대상 품목 중 15개 품목*(미국 품목번호(HTSUS) 기준)은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파생제품 부과대상에도 포함

➡ 동 품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25%)가 우선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50%)는 부과되지 않음

* 7320.10.3000, 7320.10.6015, 7320.10.6060, 7320.90.9015, 7320.90.9060, 7320.20.1000, 8302.10.3000, 8302.30.3010, 8302.30.3060, 8708.10.3050, 8708.10.6010, 8708.10.6050, 8708.29.5160, 8708.80.6590, 8708.99.6890

※ 유의사항

-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특정 자동차 부품 등 품목관세부과 대상품목군이라고 하더라도 미측의 관세부과 발표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름

〈(예시) 자동차 부품별 대미 수출 관세율 차이〉

구 분	품목(예시)	관세율	비고
자동차부품 관세	타이어, 에어백, 엔진 등	25%	한-미 협상 결과 15% 적용 예정
철강 및 그 파생제품 관세	기어, 플라이휠, 볼트 등	50%(철강 함량) 15%(철강 非 함량)	
상호관세	차량용 리모콘, 후방카메라 모듈 등	15%	

상호관세 부과대상 및 세율

- **세율 :** 추가 15%('25.10.20. 기준)
- **대상 :** 모든 물품
- **제외대상 :**

1) 50 U.S.C 1702(b)에 따라 인도적 목적 등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필수 소비재나 의약품 등
2)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
   - 철강·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대상 -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 대상 등
3) 부속서2에 열거된 품목(의약품, 반도체, 목재제품, 특정 주요 광물 등, HTSUS 공개)
4) 미국 관세율표(HTSUS)의 제2열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물품 (예 : 북한, 쿠바 등)
5)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6) 품목 가치 중 최소 20% 이상이 미국산인 경우, 그 미국산 함량
7) 4.11 추가 발표한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노트북 등 20개 품목(HTSUS 공개)

※ 상호관세 제외대상은 품목관세가 발표될 때마다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상호관세 제외대상이 조정될 때마다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연계한 품목분류 연계표를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 공개 중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Check Point

-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 품목관세 등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
- '원산지' 결정은 우리 기업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기준'이 아니라 '비특혜원산지기준'으로 판정
-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불충족되면 고율의 제3국 적용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수출물품의 '비특혜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미국의 원산지 기준

- **한-미 FTA** :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일반 원산지(비특혜원산지) 판단** :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

관련 규정 : 미 연방규정 19 CFR 134
"원산지 국가"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물품에 더해지는 추가 가공이나 추가 물질은 그러한 다른 국가에 이 장에서 의미하는 "원산지 국가"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

〈한-미 FTA와 비특혜 원산지기준 비교〉

구 분	한-미 FTA 원산지기준	비특혜원산지기준
목적	FTA를 체결한 상대국 물품에 대해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	원산지 표시, 무역구제조치(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정부조달물품의 원산지판단 등 다양한 무역정책 목적
근거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미 연방규정 19 CFR 134
기준	-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불완전 생산품인 경우 각 품목코드별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상품 ※ 세부 규정 명확	실질적 변형 기준 ※ 세부 규정 없음
영향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여부 결정	무역구제조치 등 대상여부 결정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 '원산지'로 판단**
- **미 CBP*가 개별 사례에 대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우리나라 관세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

04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Check Point

- CBP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입 전 통관 리스크를 예방하고, CBP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해석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CBP 사전심사제도 (CBP Advance Ruling, 19 CFR 177)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FTA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사전판정제도

- **신청** : 본부(Headquarters) 또는 뉴욕 소재 품목분류 전문부서(NCSD*)

  *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일반적으로 관세평가(Valuation), 운송(Carrier) 등 주로 결정이 복잡한 판정은 본부(HQ)에서, 품목분류(Classification) 등 결정이 간단한 경우의 판정은 뉴욕(NY)에서 처리함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 **신 청 인 :** 수입자, 수출자, 해당 판정 요청 사안의 이해관계자, 대리인
- **결정유형 :**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표시, ③ 원산지, ④ FTA적용
- **답변기한 :** 30일(일반적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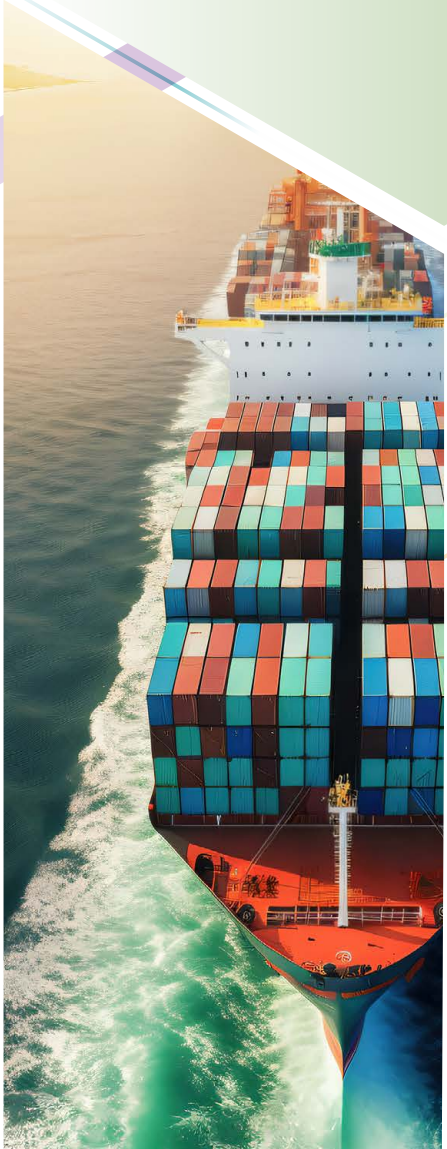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우리기업 직접 신청건 17

연결공정 제품
(한국산 원재료 사용 또는 일부 공정 수행) 75

※ 이 사례는 CBP에서 공개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기업 직접 신청건 사례 List

Case	판정번호	날 짜	사 례 명	Page
01	NY N342865	2025.01.06.	**[에틸 락테이트]**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8
02	NY N344861	2025.01.14.	**[스프레이 용기]** 원산지 판정,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20
03	NY N345329	2025.02.19.	**[OLED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2
04	NY N347172	2025.04.25.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4
05	NY N348231	2025.05.02.	**[직접식 감지 컨트롤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6
06	NY N347634	2025.05.07.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8
07	NY N347808	2025.05.07.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30
08	NY N348029	2025.05.14.	**[파워 어댑터 세트]** 원산지 판정	32
09	NY N348185	2025.05.15.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원산지 판정	34
10	NY N348403	2025.05.22.	**[화장용 브러쉬(1)]** 원산지 판정	36
11	NY N348412	2025.05.22.	**[화장용 브러쉬(2)]** 원산지 판정	38
12	NY N348301	2025.05.28.	**[골프공]**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40
13	NY N349313	2025.06.06.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원산지 판정	42
14	NY N349668	2025.06.17.	**[버터플라이 밸브]**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44
15	NY N350063	2025.06.27.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원산지 판정	47
16	NY N350112	2025.07.03.	**[레코드판]**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50
17	NY N350711	2025.07.10.	**[집적회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52
18	NY N350178	2025.07.14.	**[인스턴트 라면]**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원산지 표시	54
19	NY N350773	2025.07.21.	**[히트 펌프]** 원산지 표시	57
20	NY N350620	2025.07.24.	**[전자식 공압 요추 지지 시스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59
21	NY N350768	2025.07.28.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62
22	NY N351234	2025.07.31.	**[기계 장비용 유압 실린더]**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65
23	NY N350938	2025.08.01.	**[정맥 주사용 주사제]** 원산지 판정	67
24	NY N352190	2025.08.22.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69
25	NY N352536	2025.09.09.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71

Case 01. 에틸 락테이트

사 례 명

- **[에틸 락테이트]**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2865(2025.01.06.)**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Ethyl Lactate(에틸 락테이트)
	구 성	• 원재료 : 젖산(Lactic Acid, 중국산 원료) • 부재료 : 에탄올(Ethanol, 반응물로 사용) • 완제품 : 에틸 락테이트(화학식 $C_5H_{10}O_3$, 젖산과 에탄올의 에스터화 반응으로 생성)
	용 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희석제, 고순도 세정제 및 용해제로 활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젖산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화학적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젖산을 에틸 락테이트로 변환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본 사례에서는 ① 원재료인 젖산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 ② 한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이 화학적 에스터화 반응(esterification)이라는 점, ③ 이러한 가공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인 에틸 락테이트가 창출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고려 요소로 검토됨

- **(판정 결과)**
  - 중국산 젖산은 한국에서의 화학적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에틸 락테이트로 변형되었으며, CBP는 한국에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함

결 론

- 중국산 젖산은 한국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여 에틸 락테이트로 제조됨으로 최종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되며, 무역법 제301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Case 02. 스프레이 용기

사 례 명

- **[스프레이 용기(에어리스 펌프 용기)]** 원산지 판정,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4861 (2025.01.1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에어리스 펌프 용기(스프레이 용기)
	구 성	• 튜브형 슬리브(중국산) • 버튼, 스냅온 캡, 오버캡, 펌프(한국산)
	용 도	화장품 충전용 에어리스 펌프 용기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24.89.9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산 resin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슬리브 본체 압출, 코팅 및 도장 3. 튜브형 슬리브 한국으로 수출 4. 한국에서 튜브형 슬리브에 버튼, 펌프, 캡 등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완성 5.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기본적으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용기에 필수 구성요소인 펌프와 버튼이 결합됨으로써 스프레이 용기로 변형되었으므로, 개별 부품들이 상업적으로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진공펌프 용기의 조립 공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개별 품목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함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8424.8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84/54』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10호 내지 제8430.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판정 결과)**
  -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 튜브형 슬리브의 HS Code(제39류)가 완제품의 HS Code (제8424.89호)와 상이하므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적용이 가능함

결 론

-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한국산으로 판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Case 03. OLED 모듈

사 례 명

- **[OLED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5329(2025.02.19.)**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OLED 모듈(모델명 : AMUA11DV01, AMB686EP01)
	구 성	OLED 셀, 편광판(POL),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 회로(DDI), 연성 인쇄회로 조립체(FPCA),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로 구성
	용 도	태블릿,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화면 모듈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OLED 셀 제조(한국) - 박막 트랜지스터(TFT) 공정 : 유리 기판 위에 패터닝 및 증착을 반복하여 TFT를 형성하여 TFT 글라스 제조 - 증착(EV) 공정 : TFT 글라스 위에 유기 발광층과 음극을 증착하여 EV 글라스 제조 - 봉지(EN) 공정 : EV 글라스를 다른 유리와 접합하거나 얇은 필름으로 덮어 산소와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EN 글라스 제조 - 셀 절단 공정 : 셀 절단 후 테스트 2. 조립(ASSY)(베트남) - OLED 셀에 POL, DDI, FPCA,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를 부착하여 OLED 모듈 완성 * 연성 인쇄회로 조립체(FPCA)는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않음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OLED 모듈의 핵심 구성요소인 한국산 OLED 패널은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가공에 의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음
  - 해당 OLED 패널은 한국에서 수출될 당시 이미 최종 용도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공 이후에도 그 상업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함

- **(판정 결과)**
  - OLED 모듈의 핵심 구성요소인 한국산 OLED 패널은 베트남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OLED 모듈의 원산지는 패널이 제조된 한국으로 판단됨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 론

- 베트남에서의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완성된 OLED 모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되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04.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

사 례 명

-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ESS LFP pouch cell)]**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7172(2025.04.25.)**

사 실 관 계

<table>
<tr><td rowspan="5">제 품</td><td>제 품 명</td><td>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ESS LFP pouch cell)</td></tr>
<tr><td>구 성</td><td>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파우치, 각종 바인더와 터미널 탭 등</td></tr>
<tr><td>용 도</td><td>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 충전식 전지</td></tr>
<tr><td>원 재 료
HTSUS</td><td></td></tr>
<tr><td>완 제 품
HTSUS</td><td>8507.60.00</td></tr>
<tr><td>제조
공정</td><td colspan="2">[상세 공정]
• 파우치셀 제조공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세부작업이 있음
1. 1단계 : 전극 제조 공정
- 원재료 믹싱 및 슬러리화 : 양극/음극 활물질, 도전재, 용매, 바인더 등을 혼합해 슬러리를 만듦
- 도포 및 롤형성 : 슬러리를 금속 포일(양극/음극)에 도포해 반제품 롤(Forming semi-finished roll) 제작
- 슬리팅 : 롤을 필요한 두께로 압연(Roll Press) 후, 폭 단위로 절단(Slitting)
2. 2단계 : 전극, 분리막, 기타 부품의 조립 및 전해액 주입 단계
- 노칭과 진공건조: 전극 재단(Notching) 후, 고온 진공 환경에서 수분 제거
- 스태킹 : 양극/음극 시트와 분리막을 교대로 적층해 젤리롤(jelly roll) 구조 형성
- 탭 용접/파우치 삽입/전해질 주입 : 탭을 납땜하고 파우치에 삽입한 뒤 전해질 주입 및 파우치 밀봉
3. 3단계 : 포메이션 공정
- 포메이션(활성화) : 저속으로 충전하여 전해질과 전극 표면에 보호막 형성, 탈기 및 제품 테스트 (용량, 크기, 절연저항 등 검측)
• 원재료 조달방법(2가지)
<table><tr><td>시나리오 1</td><td>- 한국 : 단자 탭, 도체용 원재료, 다양한 바인더 재료, 분리막 롤, 전해액 드럼
- 중국 : 양극 및 음극 활성 물질 - 말레이시아 : 음극 포일 롤
- 일본 : 파우치용 필름 롤 - 프랑스 또는 미국 : 바인더 재료</td></tr><tr><td>시나리오 2</td><td>- 중국 : 양극 및 음극 활성 물질, 다양한 바인더 재료, 용매, 분리막 롤, 음극 포일 롤, 파우치용 필름 롤, 전해액 드럼
- 한국 : 다양한 바인더 재료 및 단자 탭 - 미국 : 바인더 재료</td></tr></table></td></tr>
</table>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 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다양한 형태의 원재료(액체 화학물질, 소재 롤, 원재료 등)는 한국으로 수입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었음. 외국산 원재료는 생산 라인의 각 단계에 투입되어 반제품 형태와 부품으로 가공된 후, 최종적으로 배터리 셀로 제조됨. 이러한 제조 과정의 결과물인 리튬 인산철 파우치 셀은 원재료가 생산 전 보유했던 성격과는 다른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갖고 창출되었음
  - 이처럼, 한국에서 수행되는 제조공정은 외국 원재료에 대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켰음
  - 따라서, 본건 리튬 인산철 파우치 셀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

결 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Case 05. 직접식 감지 컨트롤러

사 례 명

- **[직접식 감지 컨트롤러]**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8231 (2025.05.0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 Hands-On Detection (HOD) Controller • 부품번호 56188DO000, 56188P6000
	구 성	• 원재료 : 다양한 전자 부품(집적 회로, 저항기, 커패시터, 커넥터 등)이 장착된 인쇄 회로 기판 조립(PCBA) • 부재료 : 플라스틱 케이스
	용 도	• 자동차 스티어링 휠 내 부착되는 정전 용량 감지 시스템 •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미접촉 시 경고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543.70.986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프랑스 - PCBA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제작 - PCBA에 부품 장착 후 리플로우 오븐에서 납땜 및 가열(표면 실장 기술(Surface Mount Technology) 공정) → 검사·포장 후 중국으로 배송 2. 중국 - 중국에서 성형된 플라스틱 상·하부 하우징 내부에 장착 - 검사·포장 후 미국으로 배송	

쟁 점 사 항

-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프랑스에서 제조된 PCBA가 완제품 장치의 주요 전기적 기능을 나타내므로 완제품 장치의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
  - 중국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단순하며 PCBA를 새롭고 다른 상업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프랑스로 판정됨

결 론

-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품은 프랑스산으로 간주됨

Case 06.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사 례 명

-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7634(2025.05.0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NX4(일명 : 중간 샤프트)
	구 성	• 핀치 볼트 요크(Pinch bolt yoke, 인도산) • 파이프 요크 조인트와 샤프트 요크 조인트(pipe yoke joint·shaft yoke join, 베트남산) • 볼 슬립 부시 어셈블리 (ball slip bush·spider·dust cap·e-ring, 한국산) • 니들 베어링(needle bearing, 중국산) 등
	용 도	자동차의 조향(스티어링) 장치에 사용되어 회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함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인도, 베트남, 한국, 중국에서 개별 생산된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에서 부품의 스태킹(적층), 피팅(조립) 등을 수행하여 제품을 완성 - 멕시코에서의 전체 공정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단순 조립에 가까움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례 : *CBP Ruling(HQ) H301619(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멕시코에서의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지 않음. 베트남산 부품인 파이프 요크 조인트와 샤프트 요크 조인트(pipe yoke joint·shaft yoke joint)가 완성된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Universal Joint Assembly)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주된 부품(핵심 구성요소)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품들의 가치는 다른 개별 부품들보다 상당히 높음
  - 따라서, 본건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Universal Joint Assembly)의 원산지는 베트남산으로 판정

결 론

- 멕시코에서의 조립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베트남산 파이프 요크 조인트와 샤프트 요크 조인트가 해당 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Case 07.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사 례 명

-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7808(2025.05.0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구 성	• 흑연 코크스 • 인조흑연 등
	용 도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 일부로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7610.90.008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생산된 니들 코크스를 중국으로 운송 2. 중국에서 흑연화(graphitization) 공정을 거쳐 합성·인조흑연으로 변화 3. 인조흑연은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여 A국에서 공급된 피치(pitch)와 혼합되고, 복잡하고 정밀한 일련의 제조 단계*를 거쳐 원재료를 최종 제품인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로 변환 * 정밀한 물리적·화학적 힘의 결합과 잘 조절된 고온 처리 4.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중국산 인조흑연은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 특히 피치코팅 공정을 통해 특성의 변화가 발생
  - 피치 코팅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인조흑연은 재충전 성능(충전 효율, 안정성 측면)에 한계가 있어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으로 중국산 인조흑연이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결 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며, 무역법 제301조에 다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Case 08. 파워 어댑터 세트

사 례 명

- **[파워 어댑터 세트]**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8029(2025.05.1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Safe Ultra-fast Multi-charger(일명 : 멀티 충전기 세트)
	구 성	60W 전원 어댑터, USB-C 출력 케이블 어셈블리
	용 도	여러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하는 충전기 세트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60W 전원 어댑터는 중국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 2. USB-C 출력 케이블은 한국산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조립 3. 한국에서 출력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함께 소매용 패키지로 포장하여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중국산 전원 어댑터와 한국산 케이블 어셈블리를 함께 소매 포장하는 과정은 중국산 전원 어댑터를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음
  - 본건의 경우, 전원 어댑터가 소매 세트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멀티 충전기 세트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

결 론

-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함께 소매 포장하는 경우, 단순 소매 포장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세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된 물품의 원산지로 판정

Case 09.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사 례 명

-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8185(2025.05.15.)**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NX4(모델 7611640A, 7612134A)
	구 성	• 모델 7611640A - 강화유리/적외선 차단 유리(중국산) - 알루미늄 합금 및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프레임/레일(한국산) - 고무 실링 부품, 모터(한국산) • 모델 7612134A - 강화유리/적외선 차단 유리(한국산) - 알루미늄 합금 및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프레임/레일(한국산) - 고무 실링 부품(한국산) - 모터(필리핀산)
	용 도	승용차·SUV용 차량 지붕 개방·환기·채광 장치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모델 7611640A의 제조 공정 1. 중국산 강화 유리를 한국으로 운송한 뒤 한국에서 나머지 한국산 부품들과 함께 조립 2. 한국에서의 조립 : 폴리우레탄(PU) 캡슐화(유리를 프레임과 일체화), 부품 삽입, 나사 체결 또는 기타 부착 방식, 오일 및 윤활 처리 등 • 모델 7612134A의 제조 공정 1. 한국산 강화 유리 등 프레임, 실링 부품은 모두 한국산이며, 모터는 필리핀산임 2. 한국에서의 조립 : 모델 7611640A의 과정과 유사함 ※ 조립공정은 복합적 공정이나 유리의 물성 변화는 없음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선루프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이미 완제품 상태이며,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수출자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PU 캡슐화 과정이 복잡한 공정으로써 부품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 CBP는 동의하지 않음
  - 한국에서 이뤄지는 PU 캡슐화 기술은 유리와 프레임을 일체화하여 접착제나 클립 없이도 차체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유리 자체는 어떠한 변화도 겪지 않으며, 유리의 본질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됨.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유리를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하지 않으며, 유리의 최종 용도는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의 주요 구성품은 유리이며, 나머지 부품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유리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결정됨
  - 따라서, 본건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의 경우, 모델 7611640A의 원산지는 중국산, 모델 7612134A 한국산으로 판정

결 론

- 외국에서 반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한 뒤 추가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더라도, 반제품의 물리적 성격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반제품에 해당 물품에 필요한 기능적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면,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반제품의 제조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

Case 10. 화장용 브러시(1)

사 례 명

- **[화장용 브러시]**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8403(2025.05.2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화장용 브러시
	구 성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로 만든 절단된 브러시 섬유, 금속제 페룰, 도색된 나무 손잡이
	용 도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거나, 블렌딩하거나, 윤곽을 잡는 데 사용되는 미용 도구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제조공정 - 벌크 형태의 PBT 섬유, 완성된 형태의 페룰과 손잡이를 생산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 2. 인도네시아 제조공정 - PBT 필라멘트를 검사하고, 불량 또는 결함 있는 자재를 선별·제거 - 브러시 모(毛)를 정렬해 방향과 모양을 균질화 작업 - 브러시 모를 정해진 수량으로 나누어 균일한 다발로 조직 - 나눈 브러시 모를 원하는 브러시 헤드 구조로 성형한 후, 실로 묶어 페룰에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조정 - 성형된 브러시 모를 금속 페룰에 삽입 - 브러시 헤드가 삽입된 금속 페룰을 접착제로 고정 - 테이핑 공정을 통해 브러시 모의 여분을 제거하여 균일하고 정제된 모양으로 성형 - 불필요하거나 과잉 부분의 브러시 모를 제거 - 정렬된 브러시 모를 정밀하게 손으로 다듬어 브러시 헤드의 최종 형태를 완성 - 완성된 브러시 헤드를 접착제를 사용해 손잡이에 부착하여 화장용 브러시 최종 완성 후 품질 검사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브러쉬 모가 벌크 상태로 수입되어 완성된 브러시 헤드로 제조 되기 위해 추가 가공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래의 페인트 브러시 사례와 유사

> 참고 판정 : *CBP Ruling(HQ) 561279(1999)*
> - 중국산 돼지털 원모, 독일산 나무 손잡이, 이탈리아산 금속 페룰, 네덜란드산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페인트용 브러시 사례
> - 중국산 돼지털 가공되지 않은 원모(raw bristle) 상태로 네덜란드로 수입됨
> - 네덜란드에서 혼합·정렬·절단·페룰 삽입·에폭시 고정 등 복잡한 다단계 제조 공정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
> - 수입 시 원모(중국산)는 단순 붓 머리 전용이 아니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네덜란드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돼지털 기타 부품은 실질적으로 변형됨
> - 따라서, 페인트 브러시의 원산지는 네덜란드산임

- **(판정 결과)**
  – PBT 섬유를 포함한 중국산 부품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정을 통해 화장용 브러시라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결 론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Case 11. 화장용 브러시(2)

사 례 명

- **[화장용 브러시]**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8412, N348411 (2025.05.2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화장용 브러시
	구 성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로 만든 절단된 브러시 섬유, 금속제 페룰, 도색된 나무 손잡이
	용 도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거나, 블렌딩하거나, 윤곽을 잡는 데 사용되는 미용 도구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제조공정 - PBT 섬유와 금속 페룰로 제작된 브러시 헤드 및 완성된 형태의 손잡이를 인도네시아로 수출 2. 인도네시아 제조공정 - 테이핑 공정을 통해 브러시 모의 여분을 제거하여 균일하고 정제된 모양으로 성형 - 불필요하거나 과잉 부분의 브러시 모를 제거 - 정렬된 브러시 모를 정밀하게 손으로 다듬어 브러시 헤드의 최종 형태를 완성 - 완성된 브러시 헤드를 접착제를 사용해 손잡이에 부착하여 화장용 브러시 최종 완성 후 품질 검사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다양한 원산지를 가진 부품들이 최종 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사용된 부품의 종류, ② 그 부품들이 거치는 제조 과정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
- 단일 요소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조립(minimal assembly)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참고 판정 : *CBP Ruling(HQ) 561279(1999)*
- 중국산 돼지털 원모, 독일산 나무 손잡이, 이탈리아산 금속 페룰, 네덜란드산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페인트용 브러시 사례
- 중국산 돼지털 가공되지 않은 원모(raw bristle) 상태로 네덜란드로 수입됨
- 네덜란드에서 혼합·정렬·절단·페룰 삽입·에폭시 고정 등 복잡한 다단계 제조 공정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
- 수입 시 원모(중국산)는 단순 붓 머리 전용이 아니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네덜란드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돼지털 기타 부품은 실질적으로 변형됨
- 따라서, 페인트 브러시의 원산지는 네덜란드산임

참고 판정 : *CBP Ruling(HQ) 733199(1990)*
-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브리스틀 헤드와 금속 페룰, 필리핀에서 제조한 손잡이를 조립하여 페인트 브러시 생산
- 브리스틀 헤드의 윗부분을 평평하게 다듬고 느슨한 브리스틀을 제거 후, 필리핀에서 제작한 나무 손잡이를 브리스틀 헤드에 삽입(못질, 스테이플, 또는 크림핑으로 고정)
- 최종 제품 검사 후 폴리백에 삽입하여, 소매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브리스틀은 완제품의 핵심 요소이며,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복잡하지 않음
- 따라서 필리핀에서의 결합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판정 결과)**
  - 브러시 헤드가 완성된 브러시의 기본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물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완성된 브러시의 원산지는 브러시 헤드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중국으로 판정

결 론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

Case 12. 골프공

사 례 명

- **[골프공]**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8301 (2025.05.28.)**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골프공
	구 성	• 기본적으로 고무·합성수지 커버로 이루어진 구조 • Core(코어) : 원재료 혼합 → 절단 → 가열 및 압축 → 연마한 상태(아직 완제품 아님) • Cover(커버) : 압출, 사출 성형으로 코어를 감쌈 • Coating/Marking(도포 및 마킹) : 베이스 코팅, 마킹
	용 도	골프 경기용 공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9506.32.0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CASE 1 (한국 최종 생산) 1. 중국 자회사 : 코어(원재료 혼합·절단·가열·압축·연마) 제작 2. 한국 본사 공장으로 코어 수출 3. 한국 공장 : 커버 압출 → 사출 성형(코어 감쌈) → 베이스 코팅 → 마킹(브랜드·번호 인쇄) → 최종 검사 → 포장 4. 완제품 골프공 → 미국 수출 • CASE 2 (중국 최종 생산) 1. 베트남 : 코어(원재료 혼합·절단·가열·압축·연마) 제작 2. 중국 공장으로 코어 수출 3. 중국 공장 : 커버 압출 → 사출 성형(코어 감쌈) → 베이스 코팅 → 마킹 → 최종 검사 → 포장 4. 완제품 골프공 →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 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본 사례에서 골프공 코어(Core)는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제조된 후 아직 경기용으로 사용 불가한 반제품 상태임
  - 이후 한국 또는 중국에서 커버 압출, 사출 성형, 코팅, 마킹, 검사, 포장 등을 거쳐 실질적 기능을 갖춘 골프공으로 완성됨에 따라 최종 생산지가 원산지로 인정됨

- **(판정 결과)**
  - CASE 1 : 중국에서 코어 생산하여 한국에서 최종 성형·가공함으로 원산지는 한국으로 인정됨
  - CASE 2 : 베트남에서 코어 생산하여 중국에서 최종 성형·가공함으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인정됨

결 론

- 코어는 단순 반제품에 불과하므로, 최종 골프공으로 성형·가공이 이루어진 국가가 실질적 변형 발생지로 인정됨에 따라 CASE 1은 한국산, CASE 2는 중국산으로 판정되며, 중국산 골프공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임

Case 13.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사 례 명

-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9313(2025.06.06.)**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모델명 : AFCK20-S00041)
	구 성	• 인버터 • 메인제어보드, IMD 보드. 파워 ADC 보드 등
	용 도	전기 자동차 충전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인버터 생산 2. 한국 제조 공정 1) 저항기, 커패시터, 집적회로, 변압기 등을 기판에 표면실장(SMT) 및 스루홀(through-hole) 공정으로 납땜하여 PCBA* 조립 * 총 8개 : 메인 제어보드, IMD 보드, Power ADC 보드, LED 서브 보드, DP 리셋 보드 등 2) encloser에 한국산 산업용 PC를 설치, HMI(human machine interface), 차단기(circuit breaker), 전기 접속 장치(electrical connection apparatus), 케이블 조립 3) 테스트 및 포장 3.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여러 원산지의 부품을 납땜하여 PCBA를 제작하는 공정은 해당 부품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켜 한국산 PCBA가 생산됨
  – 중국에서 생산된 파워 모듈은 충전기의 중요한 부품이지만 한국에서 수행된 전기 변환·제어·분배 기능·조립 작업이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주요기능을 구성한다고 판단됨

결 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Case 14. 버터플라이 밸브

사 례 명

- **[버터플라이 밸브]**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9668(2025.06.1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버터플라이 밸브
	구 성	• 밸브 바디(body) : 중국에서 주조(casting) → 한국에서 내경 가공, 전·후면 가공(러그 형상 형성), 클램프링 장착부 가공·치형(serration), 상면 밀링, 샤프트·베어링·글랜드·브래킷·보텀커버 등 장착부 가동, 러그/클램프 플레이트 탭·드릴 가공 • 디스크(disk) : 중국 주조 → 한국에서 외경·보링부(샤프트 삽입부) 가공 • 클램프 링(clamp ring) : 중국 주조 → 한국에서 내·외경/홀/전후면 가공 • 시트(seat) : 한국 주조 → 외경·연결/장착/접촉부 가공 • 베어링, 디스크 핀, 패킹, 글랜드/글랜드 플랜지, 브래킷, 바텀커버, 시트 링, 체결구 등 : 베어링·디스크 핀은 한국산, 기타는 개별 원산지 언급 없음
	용 도	산업 설비의 파이핑 시스템용 유체 차단·제어(디스크 회전으로 유로 개폐)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81.80.9050 + 9903.01.25.(통관 시 동시 신고 필요)
제조 공정	[상세 공정] (A) 전·중간 가공 1. 바디(중국 주조) → 한국 반입 - 내경 가공·마감 - 전·후면 가공 및 러그 형상 형성 - 클램프 링 장착부 가공, 치형(serration) 가공 - 상면 밀링 - 샤프트/베어링/글랜드 플랜지/브래킷/바텀 패킹/바텀 커버 장착부 가공 - 러그 및 클램프 플레이트 드릴·탭 가공 2. 디스크(중국 주조) → 한국 : 외경·보링(샤프트 삽입부) 가공 3. 클램프 링(중국 주조) → 한국 : 내·외경/홀/전·후면 가공 4. 시트(한국 주조) : 클램프 링 접촉부 선삭·가공·연마 5. 샤프트(한국 주조) : 외경·연결/장착/접촉부 가공	

제조 공정	(B) 최종 조립(한국) 6. 바디 상·하부 스템 보어에 한국산 베어링 삽입 → 샤프트 일부 삽입 7. 디스크를 바디 중앙에 위치시키고 샤프트 관통 결합 → 패킹 및 바텀 커버 체결 8. 상부 샤프트 홀에 베어링 장착 → 패킹 설치 9. 브래킷, 글랜드, 글랜드 플랜지 볼팅 고정 10. 디스크 핀(한국산)으로 디스크를 샤프트에 고정 11. 시트·시트 링 장착 → 클램프 링 설치 12. 검사 → 표면처리 → 시험(test) → 도장(painting)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밸브의 조립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CBP는 밸브의 원산지 결정시 밸브 본체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음

참고 판정 : *CBP Ruling (NY) N339513 (2024)*
- 밸브 본체는 태국에서 황동봉을 단조, 절단 가공하여 제조되고 이후 중국에서 크롬 도금 처리 후 최종조립 함
- 밸브의 조립공정이 대부분 부품을 끼우고 나사로 조이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밸브본체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밸브의 원산지를 결정하며, 밸브 본체의 원산지가 태국이므로 앵글 밸브의 원산지는 태국임

참고 판정 : *CBP Ruling (NY) N338713 (2024)*
- 밸브 본체는 태국에서 황동봉을 단조, 절단 가공하여 제조되고 이후 중국에서 크롬 도금 처리 후 태국에서 최종 조립 함
- 밸브의 조립공정은 대부분 부품을 끼우고 나사로 조이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밸브 본체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밸브의 원산지를 결정하며, 밸브 본체의 원산지가 태국이므로 해당 밸브의 원산지는 태국임

참고 판정 : *CBP Ruling (NY) N325765 (2022)*
- 독일에서 중국산 밸브 본체에 중국·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산 부품 조립 및 독일산 엔드 커넥션 용접하여 완제품 밸브 생산
- 엔드 커넥션을 밸브 본체에 용접하는 과정이 중요하긴 하나, 밸브는 용접 후에도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며 구성부품들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변경되지 않음
- 독일에서의 조립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밸브의 원산지는 밸브 본체의 원산지인 중국임

참고 판정 : *CBP Ruling (NY) N322652 (2021)*
- 중국산 부품과 말레이시아산 밸브 본체를 조립 등의 공정으로 중국에서 완제품 밸브 생산
-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밸브의 원산지는 밸브 본체의 원산지인 말레이시아임

- 중국에서 주조된 밸브 바디는 한국에서 내·외경, 러그, 장착부 등 주요 기능 부위를 정밀 가공·마감함으로써 밸브 본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 **(판정 결과)**
- 밸브 바디는 중국에서 주조되었으나, 한국에서 수행된 정밀 가공(내경·러그·장착부·탭 가공 등)을 통해 비로소 밸브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획득하였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 이에 따라 본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

결 론

● 중국산 주조품은 한국에서 정밀 가공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됨

Case 15.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사 례 명

-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50063(2025.06.2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부품번호 : 285102GAV0)
	구 성	• 한국산 부품 - 매니폴드 어셈블리 : 엔진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고온 배기가스를 촉매 쪽으로 유도 - 셀 : 내부 촉매와 지지대를 감싸 고정하고 배기가스가 올바른 경로로 흐르도록 유도 - 상·하부 커버 : 주변 부품을 열로부터 보호하고 셀, 내부 촉매, 지지대를 고정 - 지지대(supporter) : 촉매 주위에 위치하여 충격 흡수 및 위치 고정. 동시에 외부로의 열 전달을 차단 - RR 콘 서브 : 후방 머플러와의 연결 지점에서 기밀성을 유지하여 배기가스 누출을 방지 미국산 부품 - 촉매 :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전체 재료비의 77.3% 차지 • 미국산 부품 - 촉매 :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전체 재료비의 77.3% 차지
	용 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고온·고압 배기가스를 저온·저압 상태로 냉각 및 팽창시켜 배기가스를 정화하고 가스 흐름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기능 수행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미국 제조공정 : 촉매 생산 - 정밀하게 측정된 정제된 점토, 알루미나 및 기타 세라믹 분말 원료를 물, 분산제 등과 혼합하여 균일한 반죽을 만듦 - 반죽을 압출기에 넣어 기판의 벌집형 셀 구조로 성형 - 압출된 긴 벌집형 기판을 균일한 길이로 절단 - 절단된 기판을 건조기에서 수분 제거 - 수분을 제거한 기판을 고온 가마에 넣어 세라믹 입자를 결합시켜 다공성 벌집 구조 형성 - 촉매의 활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귀금속(백금, 팔라듐, 로듐)을 분말 형태로 받고 특수 용매에 반응시켜 용해시켜 균일한 귀금속 용액 생성 - 고표면적 산화물 분말을 정제수 및 첨가제와 혼합하여 균일한 워시코트 슬러리 제조 - 귀금속 용액을 슬러리 형태의 워시코트와 혼합하여 촉매 슬러리 제조 - 촉매 슬러리를 세라믹 기판에 분사하여 기판 내부의 미세 채널을 균일하게 코팅한 후 건조 - 고온 가마에서 열처리하여 촉매 완성, 한국으로 수출 2. 한국 제조공정 - 수입한 미국산 촉매의 사양 및 외관 검사 실시 - 블랭킹 라인 장비에 스테인리스 스틸 코일 적재 - 판금 형태로 연속 추출하여 사양에 따라 절단 - 프레스 공정을 통해 개별 구성품 성형 - 지지체로 외부를 감싼 촉매를 쉘에 정밀하게 삽입하는 캐닝(canning) 진행 - 주요 스테인리스 스틸 구성품을 용접 지그에 적재하여 고정. - 용접하여 제품으로 완성 - 누출 검사기로 공기압을 사용하여 용접 및 조립의 기밀성과 무결성 검사 - 완제품에 라벨을 부착 3. 포장 후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촉매를 지지체로 감싸고, 캐닝하고, 스테인리스강 구성 요소를 제자리에 용접)은 미국산 촉매의 본래의 주요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되지 않음
- 추가된 스테인리스강 부품은 촉매를 보호하고 배출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판단

결 론

● 완성된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의 본질은 미국산 촉매에 의해 부여되며, 따라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임

Case 16. 레코드판

사 례 명

- **[레코드판(vinyl record)]**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50112(2025.07.03.)**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레코드판(vinyl record)
	구 성	폴리염화비닐(PVC) 수지로 만든 원형의 평평한 디스크
	용 도	아날로그 사운드 재생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스튜디오에서 오디오 콘텐츠(가사, 멜로디 등) 제작, 디지털 녹음 2. 중국 제조공정 : 나선형 오디오 홈을 통해 아날로그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매체(레코드판) 생산 - 래커커팅(lacquer cutting) 공정 : 특수 바늘을 사용하여 온라인 오디오 파일에서 파생된 오디오 신호 진동을 따라 래커로 코팅된 디스크에 미세한 홈을 정밀하게 새김 - 스탬퍼제작 : 비닐 레코드 양면에 홈을 새기는 틀 역할을 함 - 완성된 레코드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되어 한국으로 배송 3. 한국 - 기능 및 외관 검사를 포함한 최종 검사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해당 음반은 전적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제조 공정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결 론

- 완제품 레코드의 원산지는 중국이 되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대상임

Case 17. 집적회로

사 례 명

- **[반도체 집적회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50711 (2025.07.10.)**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반도체 집적회로
	구 성	실리콘 웨이퍼
	용 도	LED 백라이트 컨트롤러용 반도체 IC
	원 재 료 HTSUS	실리콘 웨이퍼
	완 제 품 HTSUS	8541.29.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前공정(한국 내 진행) - 중국산 실리콘 웨이퍼 수입(HS3818.00-1000) - 웨이퍼 제조 → 프로브 테스트 → 코팅 → 노출 → 현상 → 건식/습식 식각 → PR 스트립 → 산화/확산 → 저압 화학 기상 증착 → 이온 주입 → 화학/물리 기상 증착 → 웨이퍼 뒷면 공정 2. 後공정(중국 내 진행) - 웨이퍼 장착 → 절단 → 다이본드 → 와이어본드 → 몰드 → PMC → De-Flash → 도금 → 어닐링 → 마킹 → 다듬기/성형 3. 최종 테스트 및 포장(한국 내 진행) 4.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되는 前공정에서 확산층, 트랜지스터 게이트, 웰 영역 및 금속 배선층이 형성되며, 이러한 공정의 축적으로 IC의 전기적 특성과 기능이 결정됨
  - 중국에서의 後공정은 물리적 패키징과 출하에 필요하긴 하지만, 제품을 취급 및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역할에 그치며 IC의 전기적 기능이나 설계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음
  -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

결 론

- 물품의 핵심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는 중국산이지만 한국에서의 前공정으로 제품에 주요한 특성인 필수회로를 통합한 직접 회로가 생성되며, 중국에서의 後공정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됨

Case 18. 인스턴트 라면

사 례 명

- **[인스턴트 라면]**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50178(2025.07.19.)**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XL Ramen Noodles with Soup Mix(Hot & Spicy)
	구 성	• 분말 스프, 건조 어묵·야채 플레이크, 면 ① 면의 구성성분 - 원산지 미상 : 밀가루, 팜유, 변성 타피오카 전분, 감자 전분, 글루텐, 소금, 마늘가루 등 - 중국 : 리보플라빈 ② 스프베이스 구성성분 - 중국 : 소금, MSG, 고춧가루, 이산화규소, 버섯분말, 글리신, 효모추출물 등 - 한국 : 조미간장분말, 인공쇠고기향, 설탕, 옥수수전분, 인공사골향, 된장분말, 볶음양념분말 등 - 프랑스 : 캐러멜색소 - 인도 : 캡사이신올레오레진
	용 도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2104.10.002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면(중국 제조) - 밀가루와 다른재료를 혼합하여 면 형태로 성형 후 찌기 - 팜유로 튀긴 후 건조 - 포장 후 한국으로 수출 2. 건조어묵/야채 플레이크(한국 제조) -특정 배합비에 따라 원재료를 계량 및 혼합 -포장	

제조 공정	3. 분말스프(한국 제조) - 원재료 계량 → 혼합 → 가열 → 건조 → 분말화(transformation into powder) - 포장 ※ 4개의 면, 개별포장된 건조어묵·야채플레이크와 분말스프로 구성되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쟁 점 사 항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2104.10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1202) General Note 33(o)/Chapter 21/Rule 6』에 따라 다음의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판정 결과)**
  -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말레이시아·인도·프랑스 등의 비원산지 재료는 모두 제21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므로, 제21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은 한국산으로 판정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가능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1940)*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다른 국가에서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이나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만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

- **(판정 결과)**
  - 분말스프와 건조어묵·야채 플레이크는 한국에서 미리 배합된 재료를 계량하고 혼합하는 방식으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원료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되므로 한국산으로 판정됨
  - 면은 중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되므로 중국산으로 판정됨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시에는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각각 표기해야함(① 면 :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② 분말스프와 건조어묵·야채 플레이크 : 'Made in South Korea' 또는 'Product of South Korea')

결 론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한국산으로 판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구성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공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져 제품 전체를 한국산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미국 수출시 각 구성품의 국가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함
  (면 : 중국 / 분말스프, 건조어묵·야채 플레이크 : 한국)

Case 19. 히트 펌프

사 례 명

- **[히트펌프]**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50773(2025.07.21.)**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히트 펌프(Heat Pump)
	구 성	압축기, 열교환기, 모터 및 팬 어셈블리, 밸브 어셈블리, 제어판, 어큐뮬레이터
	용 도	냉난방기의 실외기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압축기, 섀시등 주요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공급됨 • 모든 가공 및 조립은 한국에서 수행 1. 열교환기 유닛 제작 - 중국산 구리 튜브 코일을 U자형 성형기에서 절단·성형 - 사각 평판형 핀튜브 조립체 성형 - U자형 튜브를튜를 핀 튜브 조립체에 납땜하여 열교환기 제작 2. 최종 조립 - 고무 그로밋을 압축기 하부에 장착 - 압축기·어큐뮬레이터베이스에 위치·볼트 체결 - 히팅 테이프 볼트 체결 - 고압 파이프 어셈블리 2개 볼트로 고정 - 압축기 리턴 파이프조립(어큐뮬레이터 출구 ↔ 압축기 입구) - 4-방향 밸브 어셈블리 파이프를 유닛 외측으로 위치 - 압축기/어큐뮬레이터 입구와 출구를 납땜 후 고정 - EEV(전자팽창밸브) 어셈블리서포트 지지판에 고정 - 열교환기 유닛베이스에 나사 체결 - 납땜 3지점 : (1) 서비스 밸브 어셈블리 ↔ EEV, (2) EEV ↔ 콘덴서 파이프, (3) EEV 관련 구리 파이프 접점 - 외장 패널베이스에 나사 체결 - 플라스틱 커버장착 - 보조부품 설치 : 센서, 사운드 재킷, EEV 코일, 솔레노이드 밸브 - 진공 공정 - 충전 공정 - 팬 어셈블리설치·고정 - 메인 컨트롤 패널설치·고정 - 완성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 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잇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 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1940)*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다른 국가에서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이나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만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판정 결과)**
  - 온도 변화 공정에 기여하는 부품을 포함한 중국산 부품이 한국에서 최종 조립되어 히트 펌프로 완성됨
  - 최종 조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나사 및 볼트 체결, 납땜과 같은 공정으로 복잡하지 않음
  - 여기서 납땜은 배관을 열교환기에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용접공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국산 부품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히트 펌프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결 론

- 한국에서의 단순 조립 및 가공 공정은 중국산 부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해당 물품은 중국산으로 판정됨

Case 20. 전자식 공압 요추 지지 시스템

사 례 명

- **[전자식 공압 요추 지지 시스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50620(2025.07.2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전자식 공압 요추지지 시스템(7CELL)
	구 성	전기식 공기 펌프 모터, 스프링 장착 에어 튜브, 플라스틱 에어 튜브
	용 도	자동차 좌석 등받이 하단 부분에 장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한국 공장에서 한국산 부품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제품(7CELL) 제조	

한국산 부품	중국산 부품
· 금액 기준 부품의 약 70% 한국에 있는 공급 업체가 조달 및 제조	· 전기식 공기 펌프 모터 · 스프링 장착 에어 튜브 · 전원 연결용 코팅 와이어 · PET 맞춤형 에어셀 또는 블래더 · 플라스틱 에어 튜브 · ECU 통합용 플라스틱 씰이 장착된 구리 솔레노이드 밸브, 미국 차량 시트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클립

제조 공정	**1. ECU 제조 및 프로그래밍** - 7CELL 장치에서 사용할 ECU를 차량 모델별로 생산 -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사양과 입력자료 수령 - 표면 실장 기술(SMT)을 사용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 트랜시버 및 기타 부품을 PCB에 배치 - 차량별 펌웨어를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적재(로딩) - 8개의 구리 솔레노이드 밸브와 고무 씰을 PCB에 부착 -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PCB 어셈블리 포장 - 각 PCB에 부착된 바코드를 사용하여 차량 모델별 ECU 추적, 라벨링, 포장 **2. 와이어 서스펜션 프레임 제작 : 탑승자의 등에 닿는 7CELL의 느낌을 부드럽게 하도록 프레임 설계** - 한국산 철강으로 한국에서 제조된 미절단 와이어와 코팅 와이어를 한국 생산자가 프로그래밍한 와이어 벤딩(bending)기계에 투입 - 벤딩 기계는 코팅 와이어를 절단하고 구부려 두 개의 수직 지지대를 만들고, 수평 교차 와이어를 절단하고 구부려서 두 개의 수직 와이어에 고정함 **3. 부품 조립** - 7CELL 조립**(방음, 튜빙, 고정 등 수동 및 반자동 하위 공정이 모두 포함)** **① 방음** - 국내 산업용 직물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부직포 방음 원단으로 와이어 서스펜션 프레임, ECU, 에어 펌프, 에어 튜브, 블래더 및 기타 부품들을 덮는 작업을 하며, 원단 조각은 특정 차량 모델의 차량 시트 크기와 모양 사양에 맞춰 제작됨 - 방음 원단으로 덮는 작업을 위해서, 별도의 지지 와이어(중간 와이어라고 함)를 서스펜션 프레임에 펀치 클램프로 고정한 후, 양쪽에 미리 절단된 방음 원단을 접착하여 감싸는 선행 작업이 필요함 - 각 구성품은 특정 차량 모델 및 트림별 위치 맵에 표시된 정확한 위치에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서스펜션 프레임에 수동으로 고정 - 상부와 하부로 나뉜 플라스틱 블래더 쉘케이스(한국에서 사출성형으로 제조)에 들어 있는 2개의 플라스틱 "볼스터(bolster)" 블래더를 수동으로 볼트 고정 **② 튜빙** - 튜빙 기계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플러그와 소켓을 공지 펌프 튜브에 부착 - ECU를 서스펜션 프레임에 부착하기 전, 7개의 공기 셀 튜브 끝부분을 별도의 튜빙 기계를 사용하여 ECU 밸브에 부착 - 튜빙 기계에서 밸브 스템에 완전히 안착되도록 일정한 힘을 가하는 단계는 ECU와 각 공기 셀 간 차질 없는 공압 통신을 위한 시스템 기능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정렬 불량이나 불완전한 밀봉은 시스템 고장 또는 요추 지지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 **③ 조립 마감** - ECU를 서스펜션 프레임에 연결하여 조립 과정 완료 **4. 품질 관리 및 성능 테스트** - 제품이 설계 사양 및 성능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 -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EOL(End-of-Line) 검사 장비에 각 유닛 연결 - ECU 초기화, 진단 신호 검사, 펌웨어 무결성 확인, 펌프 작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밸브 스위칭 회로 전반에 걸친 전기적 연속성 확인 -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제품에 합격/불합격을 판정하고, 불합격 제품은 문서화된 결함 코드 및 처리 지침과 함께 재작업 스테이션으로 이송 -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QC 스티커를 부착하고 추적 시스템에 기록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상당 수의 부품 및 구성품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SMT 공정을 통한 PCBA제조를 포함한 제조 공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한국산이 아닌 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될 때 상당한 변형을 거쳐 개별적인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품목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갖게 됨

결 론

- 해당 제품 7CELL의 원산지는 한국이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지 않음

Case 21. 배추김치

사 례 명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50768(2025.07.28.)**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배추김치
	구 성	• 절임 배추(중국산) • 멸치액젓(한국산) • 냉동 마늘(중국산) • 생강(한국산) • 정제염(한국산) • 무(한국산) • 고춧가루(중국산) • 설탕(한국산) • 찹쌀가루(한국산) • 글루탐산나트륨(MSG)(한국산)
	용 도	식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2005.99.97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절임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 무, 마늘, 생강을 다져 물과 찹쌀가루와 혼합하여 끓인 후 식힘 - 고춧가루 및 기타 재료를 넣어 양념 제조 - 절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림 - 밀폐 용기에 담아 0~10℃ 저장실에서 1~7일간 발효 - 10kg 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C.A.D. 98) (1940)*
>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다른 국가에서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이나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만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

  - CBP는 본 사례의 판정을 위해 아래의 판정을 인용

>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48683(2025)*
> - 사실관계 : 그리스산 올리브를 스페인에서 세척, 발효, 선별 및 씨 제거(pitting)하고 피망·치즈 등 속재료를 넣은 후 병이나 캔에 소매용으로 포장
> - 판정 : 그리스산 올리브는 수입 시점에도 올리브이고 스페인에서 가공 후에도 올리브이므로 실질적 변형 불인정
>
>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26044(2022)*
> - 사실관계 : 스페인산 생마늘을 남아프리카에서 발효, 가열(toasting), 껍질 제거 후, 소량의 쌀겨와 혼합·분쇄하여 흑마늘 시즈닝으로 제조
> - 판정 : 남아프리카에서의 가공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페인산 마늘이 여전히 그 특성을 유지하므로 흑마늘 시즈닝의 원산지는 스페인으로 판정
>
>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08973(2020)*
> - 사실관계 : 미국에서 재배, 수확, 탈각한 콩을 일본에서 혼합, 세척 후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침지, 가열 및 증기 처리하여 소매용으로 포장
> - 판정 : 일본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제품의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

- **(판정 결과)**
  - 중국산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점에도 배추였고 한국에서 가공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2005.99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1202) General Note 33(o)/Chapter 20 / Rule 1』에 따라 다음의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판정 결과)**
  -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절임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은 모두 제20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므로, 제2005.9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은 한국산으로 판정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가능

결 론

-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은 원산지 표시 목적상 중국산으로 판정됨
- 그러나,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한국산으로 판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Case 22. 기계 장비용 유압 실린더

사 례 명

- **[기계 장비용 유압 실린더]**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51234(2025.07.31.)**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Hydraulic Cylinders for mechanical equipment
	구 성	Tubes, Collars(고정 장치), Inner/Outer Rings, Head Covers, Rods, Knuckles, Pins, Bushings, Seals
	용 도	• 유압 실린더는 유압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직선 운동을 생성 • 건설, 제조, 농업,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무거운 하중을 밀거나 당기거나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12.21.0075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57개 부품(대부분 한국산, 일부는 일본, EU, 중국에서 조달)으로 한국에서 유압 실린더 생산 - 봉 부품 제조(원강 준비, 외경 및 피스톤 면적 가공, 연마, 버핑, 도금, 너클 용접) - 봉 전체 그룹 조립(봉 커버 그룹, 피스톤 그룹, 피스톤 너트 등 조립, 모든 부품을 체결) - 튜브 부품 제조(중속강관 절단 및 가공, 용접 칼라 및 헤드 커버, 내부 링 조립) - 봉 전체 그룹과 튜브 부품 연결 2. 완제품 유압 실린더 →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원자재는 모두 유압 실린더 제품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가공 단계를 아직 거치지 않은 단순한 부품들이며, 모든 제조 공정은 한국에서 수행됨
  - 각 단계에서 부품이 조립될 뿐만 아니라 재료의 형태, 기능 및 특성이 유압 실린더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크게 변경되므로, 중국·EU·일본에서 조달된 개별 부품 및 구성 요소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결 론

- 일부 부품이 중국산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제조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인 유압 실린더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됨

Case 23. 정맥 주사용 주사제

사 례 명

- **[정맥 주사용 주사제]**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50938(2025.08.01.)**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INFLECTRA for injection
	구 성	
	용 도	• 인플렉트라는 종양 괴사 인자(TNF) 차단제 • 크론병, 소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소아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및 판상 건선 치료를 위해 정맥주사(IV)로 투여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73.30.51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유효 의약 성분(API) 또는 약물 성분(DS) 제조 후 포르투칼로 수출 2. 포르투갈 제조공정 : 완제 형태의 바이알 제조 - API와 부형제(excipients)를 함께 조제하여 바이알에 충전 - 동결건조 후 100mg 용량의 분말 형태인 'unlabeled drug product(uDP)'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 3. 미국 제조공정 - 라벨링 및 포장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활성 성분(한국 제조)을 부형제와 함께 포르투갈에서 100mg 바이알 형태로 제형화하는 과정은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됨

※ 참고

- 이 상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관리하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또는 2002년 공중보건안보 및 생물테러 대비 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생물테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결 론

- 포르투갈에서의 제형화 과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플렉트라 주사제 최종 약품의 원산지는 Infliximab-dyyb라는 유효성분을 제조한 한국으로 판정됨

Case 24.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사 례 명

-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52190(2025.08.2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구 성	• 디스펜서 유닛(부품 번호 ADPK40-S00062)과 파워 캐비닛(부품 번호 APCK60- S00006) - 디스펜서 유닛은 전기 제어 장치(electrical control apparatus), Power supply, 냉각 시스템이 내장된 인클로저로 구성 - 파워 캐비넷은 금속 캐비닛 내에 다양한 파워 모듈 어셈블리로 구성
	용 도	차량 충전 스테이션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파워 캐비넷용 파워 모듈 생산 2. 한국 제조 공정 1) 표면실장기술(SMT)로 디스펜스 유닛과 파워 캐비넷에 사용될 PCBA 생산 2) 디스펜스 유닛 조립 - 1)에서 제조한 PCBAs를 encloser에 설치 - HMI 화면, 냉각 장치, 각종 차단기, 접속 장치, 케이블을 encloser과 조립 3) 파워캐비넷 조립 - 중국산 파워 모듈을 encloser에 설치하고 한국산 PCBA와 결합 - 릴레이, 차단기, 단자대(terminal blocks), 모터 제어 어셈블리를 encloser과 조립 4) 시스템 완성 - 두 개의 디스펜서 유닛과 한 개의 파워 캐비넷을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된 SMT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핵심 제어 PCBA가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함
  - 또한 중국에서 제조된 파워모듈이 중요한 구성요소이긴 하지만, PCBA와 정밀한 조립과정이 완제품의 의도된 기능을 부여
  -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은 3개의 구성품(두 개의 디스펜서 유닛과 한 개의 파워 캐비넷)이 함께 수입될 경우 한국산으로 간주

결 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며, 해당 제품은 3개의 구성품이 함께 수입될 경우 한국산으로 간주

Case 25.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

사 례 명

-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52536(2025.09.09.)**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조명 포함)
	구 성	• 에어백 쿠션 및 플레이트 : 태국산 • 커버 및 조명 : 한국산 • 인플레이터 : 미국산 • 하드웨어 : 중국산 • 라벨 : EU산
	용 도	차량 충돌 감지 시 에어백 팽창으로 탑승자 보호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각 부품들을 한국에서 최종 조립 - 부품별로 서로 삽입, 나사로 조립 - 높이 검사 및 경적 테스트 실시 2. 조립 후 완제품으로 최종 검수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신청인는 인플레이터가 화학 추진제를 포함하여 가스를 발생시키고, 에어백 제어 장치의 신호에 따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구동원으로써 최종 제품의 핵심 부품이라 주장
  - 그러나 CBP는 인플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충돌 시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팽창한 에어백이므로 에어백이 모듈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판단
  - 각 부품은 한국 도착 시 최종 용도가 확정되어 있으며, 조립 과정에서 그 특성이나 기능이 변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공정은 단순조립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잇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참고 판정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판정 결과)**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결정시 판단과 동일

결 론

-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의 무역법 제301조 무역 제재 조치 및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태국임

연결공정 제품(한국산 원재료 사용 또는 일부 공정 수행) 사례 List

Case	판정번호	날 짜	사 례 명	Page
1	NY N346168	2025.03.17.	**[메인 빔 모듈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76
2	NY N346278	2025.03.19.	**[C형 락킹 플라이어]**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80
3	NY N346582	2025.03.27.	**[STP 바지선]** 원산지 판정	82
4	NY N346963	2025.04.01.	**[싱크대 하부설치 정수기 세트]**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84
5	NY N346907	2025.04.04.	**[플라스틱 운송 박스]**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86
6	NY N347193	2025.04.09.	**[리튬이온 배터리 팩]** 원산지 판정	88
7	NY N345393	2025.04.11.	**[천연흑연 음극 활성 물질]** 원산지 판정	90
8	NY N347101	2025.04.16.	**[전기식 정수기 교체용 필터]** 원산지 판정	92
9	NY N347190	2025.04.22.	**[구리 파이프]** 원산지 표시	94
10	NY N347698	2025.05.02.	**[정수 필터 탱크 및 교체용 정수 필터]** 원산지 판정	96
11	NY N347638	2025.05.07.	**[전기 커플러]** 원산지 판정	98
12	NY N348081	2025.05.07.	**[정맥주사 투여 세트, 정맥주사 연장 세트, 튜브 전송 세트]** 원산지 판정	100
13	NY N348710	2025.05.12.	**[가정용 정수 시스템 필터 카트리지]** 원산지 판정	103
14	NY N348209	2025.05.16.	**[(일회용, 비멸균) 플라스틱 컵]** 원산지 판정	105
15	NY N348322	2025.05.20.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 원산지 표시	107
16	NY N348298	2025.05.21.	**[가정용 전기 정수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09
17	NY N348790	2025.05.22.	**[유리섬유 줄자]** 원산지 판정	112
18	NY N349144	2025.06.04.	**[스마트 타겟]** 원산지 판정	114
19	NY N349688	2025.06.17.	**[아기 인형 세트]** 원산지 판정	116
20	NY N349742	2025.06.18.	**[특수카메라]**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18
21	NY N350041	2025.06.23.	**[혈당 측정기]** 원산지 표시	120
22	NY N350106	2025.06.24.	**[하드라인 케이블]**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23
23	NY N350325	2025.06.24.	**[LED 조명기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125
24	NY N349992	2025.07.03.	**[모니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128
25	NY N350085	2025.07.08.	**[세탁기/건조기용 조명]** 원산지 판정	131
26	NY N350571	2025.07.15.	**[반려동물용 물티슈]** 원산지 판정	133
27	NY N351335	2025.07.28.	**[스퍼터링 타겟]** 원산지 판정	135
28	NY N351552	2025.08.12.	**[아기용 물티슈]** 원산지 판정	137
29	NY N351810	2025.08.27.	**[유체 단]**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139
30	NY N352562	2025.09.04.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원산지 판정	142

Case 01. 메인 빔 모듈 어셈블리

사 례 명

- **[Main Beam Module Assemblies]**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사 례 번 호

- **NY N346168(2025.03.1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Main Beam Module Assemblies
	구 성	PCB 패드, 렌즈, 히트 싱크 등
	용 도	차량용 LED 램프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 공정(광원모듈 제조) 1) OS와 LED 드라이버 펌웨어를 갱 프로그래밍(Gang Programming) 방식으로 eMMC(AP)에 다운로드한 후,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 2) UV 레이저 마킹 : UV 레이저로 2D 바코드를 인쇄하여 제품 정보를 표시하고 생산 추적성(procuction traceability) 보장 3) 스크린 프린터 - 전자 부품 장착 준비를 위해 제어된 압력과 속도로 인쇄 회로 기판("PCB") 패드*에 솔더 페이스트를 인쇄 * PCB 패드: 전자 부품을 연결하는 PCB 보드의 금속 접점 4) SPI : 3D 검사를 통해 PCB 패드의 솔더 인쇄 상태와 도포량을 측정함으로써 품질을 보장 5) 칩 마운터 : SMT 공정 수행을 위해 PCB 위에 SMD 부품을 고속 및 정밀하게 배치 6) 리플로우(reflow) : 구역별 온도 조절을 통해 솔더를 용융·경화시켜 SMD 부품을 PCB에 영구적으로 부착 7) AOI : 결함을 식별하기 위해 자동 광학 검사(AOI)를 통해 솔더링 품질과 부적절한 배치를 검사 8) 통합 ICT/FCT : ICT 검사를 통해 회로 이상을 확인한 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Secure Debug FCT 테스트를 수행 9) 코팅 : PCB 기판에 코팅 액을 균일하게 도포하여 습기와 오염으로부터 보호	

제조 공정	10) 커넥터 AOI & 코팅 검사 : Waveless 타입 커넥터의 장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 광학 검사를 수행하고, 코팅된 영역과 두께를 자동으로 검사하여 코팅 상태를 확인 11) 광원 모듈 제조 공정 - 라우터 공정(Router process) : PCB 기판을 개별 모듈로 절단(Routing)하여 트레이에 적재 - 선택적 납땜(Selective Soldering) : 커패시터와 같은 부품을 선택적으로 납땜 - 완성된 광원 모듈을 멕시코 공장으로 수출 **2. 멕시코 제조 공정** 1) 최종 조립 공정 : LAM, 히트싱크, 베젤, 렌즈 및 배선을 조립(조립 장비 사용) 2) 검사 : 외관 및 점등 검사를 수행(검사 장비 사용) 3.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전용 포장 용기에 보관 및 밀봉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us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l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음

> 1) 구성 부품의 원산지
> 2)해당 국가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정도
> 3) 해당 가공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탄생했는지 여부
> ※ 이 외에도 다음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음
> -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 - 조립 이후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 - 실제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품명(name)의 변경 없음 : 수입된 각 부품은 완성된 공구에서도 동일한 품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품명의 변화가 없다고 봄
- 특성(character)의 변화 없음 : 해당 부품들은 대만에서 열간 단조(hot-forging) 또는 냉간 성형(cold-forming)을 통해 최종 형상으로 제조되엇으며, 이후 미국에서 열처리, 전기 도금, 조립이 이루어졌지만 그 본질적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
- 용도(use)의 선(先) 결정 : 수입 시점에서 각 부품은 특정 수공구에 조립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용도 또한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이는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다고 봄(단, 하나의 예외사례는 제외)
- 부가가치 주장 기각 : 원고가 주장한 "미국 내에서의 부가가치가 대만에서의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논리가 동일한 공정에 수행하더라도 판매 가격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각

참고 판례 : *Energizer Bettery.Inc v. United States, 190F.Supp.3d 1308(2016)*

- 법원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기준을 검토하였고, Uniroyal, Inc., 3 C.I.T.226판례를 인용하여, "수입 후의 공정이 단순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수입된 부품이 물리적 변화를 겪지 않은 경우에는 특성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용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사례로 National Hand Tool Corp. 사건을 인용함
- 해당 사건은 쟁점을 "수입된 부품들이 완제품인 Genernation Ⅱ thswjsemddmfh 조립된 후에도 각각의 품명을 유지하는지 여부"로 보았고 "Generation Ⅱ손전등을 구성하는 부품들는 수입 후 조립 공정으로 인해 각각의 품명을 잃지 않으며, 수입시점에 이미 Generntion Ⅱ 손전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며 조립이 후에도 용도(use)의 변화는 발생하기 않았다"고 판단함
- 마지막으로, 해당 조립 공정이 실질적으로 변형을 발생시킬 정도로 복잡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Generation Ⅱ 손전등을 구성하는 수입부품들이 조립을 통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중 어느 것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시함
- 또한, Generation Ⅱ손전등의 거의 대부분의 부품, 특히 가장 중요한 부품인 LED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완성된 손전등의 원산지가 중국임을 확정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역시 고려함

참고 판례 : *Uniroyal, Inc United States, 3 CIT 225*

- 미국 내에서 외부 밑창(outsloe)에 부착된 수입산 신발 갑피(shoe uppers)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인 요소(very essence of the finished shoe)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제품의 특성(charcter)이 변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

참고 판례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61,628 F. Supp.978, 991(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orange juice concentrate)이 완제품 오렌지주스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Imparts the essential character)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는 미국산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

- CBP는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광원(light source)의 원산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017620(2018)*

- 다양한 수입 부품(개별 부품 및 하위 조립체)이 미국 내에서 수행된 작업에 의해 렌즈 헤드 하위조립체(lens head subassembly) 및 완성된 손전등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
- 미국산 LED가 손전등의 주요 관원을 생성함으로써 렌즈 헤드 하위조립체 및 손전등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한다고 언급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215657(2013)*

- LED를 손정등의 가장 중요한 부품(most Important component)으로 언급

- 한편, CBP는 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A)에 제조·조립하는 과정도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

참고 판정 : *Customs Service Decision(C.S.D) 85-25「Customs Bulletin」제19호 844쪽(1985)*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단에 있어, 다수의 가공된 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에 조립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다고 판시
- 해당 사례에서는 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 집적회로, 소켓, 커넥터 등 50개 이상의 개별 부품이 PCB에 조립됨
- CBP는 이 PCBA 조립 과정이 매우 많은 수의 부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작업공정이 포함되며,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가 필요하고, 세심한 주의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114395*
- CBP는 미국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목적상 디지털 광처리(DLP) 프로젝터의 원산지를 PCBA 메인보드 및 광원이 조립된 국가로 판단함
- 해당 프로젝터는 모바일 기기의 사진과 영상을 표면에 투시하기 위한 광원으로 대만산 LED를 사용함
- 시나리오 1 : 광학엔진과 PCBA 메인보드(중국 조립) → 최종 조립(대만)
- 시나리오 2 : 광학 엔진과 PCBA 메인보드(대만 조립) → 최종조립(대만)
  * 두 시나리오 모두 일본, 중국, 한국, 태국, 대만 및 미국에서 공급된 부품이 광학 엔진(light engine)과 PCBA 메인보드로 조립됨
- CBP는 광학 엔진과 PCBA 메인보드가 프로젝터의 본질적 요소(essence)이며, 이들의 생산이 최종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
- 따라서 광학 엔진 모듈과 PCBA 메인보드 모듈이 조립되고 프로그래밍 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원산지는 시나리오 1(중국), 시나리오 2(대만)

- CSD 85-25와 HQ H114395에 따라 메인 빔 모듈 어셈블리의 경우, 멕시코에서 한국 및 멕시코산 LED와 한국산 PCB를 조립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
- 한국에서 수행된 부품의 가공 및 제조, 즉 나사, 커넥터, 납땜을 통해 구성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LED 조명이 포함된 PCBA의 실질적인 변형에 해당할 정도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됨
- 플라스틱 렌즈와 반사판은 고객의 기대에 맞게 빛을 확산시키는 차량용 램프 기능에 기여하지만, HQ H114395 사례에서와 같이 "PCBA"는 이미 LED와 회로가 완전히 통합된 완전한 광원임
- Energizer 판결에서와 같이 멕시코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미미하며, 부품들의 형태(shape), 재질 구성(material composition)이 변경되지 않으며, 조립이 완료된 후에도 부품은 여전히 그 품명을 유지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있는 공정이며, LED 차량용 램프의 원산지는 LED 조명이 포함된 PCBA가 제조되는 한국으로 판단됨

결 론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PCBA 제조가 이루어진 한국으로 판단되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Case 02. C형 락킹 플라이어

사 례 명

- **[C형 락킹 플라이어(C-Locking Pliers)]**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6278(2025.03.19.)**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C형 락킹 플라이어(C-Locking Pliers)
	구 성	고정조(fixed jaw), 이동조(movable jaw), 고정 핸들, 조절식 핸들, 해제 레버, 피벗 조인트, 회전 패드, 조정 볼트/나사
	용 도	목공, 용접등의 작업에서 작업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손 도구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중국산 강봉을 고정 턱, 가동 턱, 고정 손잡이, 조절 손잡이의 최종 형상으로 제작 후 중국 수출 2. 중국 제조공정 - 제작된 턱(jaw)과 손잡이(handle)를 추가가공(열처리, 도금, 구멍 가공) - 턱(jaw)과 손잡이(handle)를 중국산 부품*과 조립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 피벗 조인트, 해제 레버, 리벳 핀, 스프링, 스위플 패드, 조절 볼트/나사	

쟁 점 사 항

-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성질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다양한 원산지를 가진 부품들이 최종 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사용된 부품의 종류, ② 그 부품들이 거치는 제조 과정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
  - 단일 요소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조립(minimal assembly)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해당 물품의 핵심 부품인 고정 턱, 가동 턱, 고정 손잡이, 조절 손잡이가 제조되며 이 핵심 부품들은 완성공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형성하며 해당 용도에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 및 조립작업은 한국에서 제조된 핵심 부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결 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므로 최종물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되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03. STP 바지선

사 례 명

- **[STP 바지선 (STP Barge)]**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6582(2025.03.2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STP 바지선(Seawater Treatment Plant Barge)
	구 성	• 바지선 선체 : 한국산 • 해수처리 플랜트(STP) : 인도네시아산 - 다수의 여과 장치, 황산염 제거, 발전 시스템 및 모듈, 배수 장치 등 포함
	용 도	지하 저류층에 주입할 해수를 처리하여 지속적인 석유 생산 지원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바지선 선체 생산 후 인도네시아 수출 2. 인도네시아에서 ① STP 플랜트 모듈 제조, ② 한국산 바지선에 STP 설치 3. 설치 완료 후 하나의 일체화된 부유식 설비로 운용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신청인은 STP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어 바지선에 설치되므로 STP 바지선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라고 주장함
  - STP가 바지선의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구성품이긴 하나, 바지선은 STP 장착 여부와 무관하게 선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출항 당시 바지선은 완전한 기능을 갖춘 선박이었으므로 STP 바지선의 원산지는 한국임

결 론

- STP 바지선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단

Case 04. 싱크대 하부설치 정수기 세트

사 례 명

- **[싱크대 하부설치 정수 시스템 세트(직수형 정수기)]**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6963(2025.04.01.)**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싱크대 하부 설치 정수 시스템 세트(직수형 정수기)
	구 성	• 정수기 세트는 필터 엘리먼트, 커넥터, 부속품 팩으로 구성 - 필터 엘리먼트 : 중국산 O-링, 상·중·하부 커버, 저수통(sump), 투명 보호 필름, 한국산 카본 블록으로 구성 - 커넥터 : 중국산 스프링, 나사, O-링, 커넥터 스위치 커버, 커넥터 스위치, 고정링, 조인트 상부 커버, 컵 홀더, 지지대, T-조인트가 포함 - 키트 : 중국산 스테인리스 급수관, 타이머, 너트, 테플론 테이프가 포함
	용 도	싱크대 아래에 설치하여 수전으로 공급되는 찬물 라인에 연결, 1단계 필터를 통해 염소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수 공급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21.21.0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카본 블록(carbon block) 제조 ※ 카본 블록은 물속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제조에 상당한 가공이 필요하고 전체 필터 중 가장 큰 비용 차지 2. 중국 제조공정 - O-링을 중간·상부 커버에 삽입(흠집, 얼룩, 색상차이 유무 육안 검사) - 접착제로 카본 막대와 상·하부 커버 접착(카본 블록이 손상없이 균일하게 접착) - 용접기로 상부 커버, 카본 막대, 섬프를 용접 및 결합하여 필터 엘리먼트 제조 - 기밀성 테스트 : 조립완료된 필터 엘리먼트를 기밀성 시험 장비에 장착하고 육안 검사 - 필터를 추가 부속품 키트 및 커텍터와 최종 소매 포장 ※ 중국에서의 공정은 총 12단계로 구성되며, 위 제시된 중국 제조 공정은 필터 엘리먼트 조립 공정(5단계) 과정에 대한 설명임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중국에서 수행된 접착, 용접, 압착 공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많은 부품들이 생산되었지만 전체 시스템에서 작은 기능만 수행함
  – 중국에서 모든 부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개별 부품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상업적 물품이 창출되지 않음
  –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그 생산에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맞춤 설비가 필요하고 필터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며 필터의 핵심기능인 정수(filtering)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블록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결 론

-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단순공정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전체 시스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블록을 생산한 한국임

Case 05. 플라스틱 운송 박스

사 례 명

- **[플라스틱 운송 박스]**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6907 (2025.04.0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플라스틱 운송 박스
	구 성	• Guide Top(중국산) • Sleeve(중국산) • Guide Bottom(중국산) • Tray Insert(한국산, 배터리 셀을 고정하는 트레이)
	용 도	배터리 셀을 담고 고정·보관·운송하기 위한 플라스틱 운송용 박스
	원 재 료 HTSUS	• Guide Top(중국산) : 3923.50, HTSUS(stoppers, lids, caps 등 관련품) • Sleeve(중국산) : 3923.90, HTSUS(기타 플라스틱 포장용품) • Guide Bottom(중국산) : 3923.90, HTSUS
	완 제 품 HTSUS	3923.10.9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제조공정 - Guide Top, Sleeve, Guide Bottom 생산 - 세 부품을 미조립 상태(완성 전의 박스 세트)로 한국으로 수출 2. 한국 제조공정 - Tray Insert 생산 - Guide Top + Sleeve + Guide Bottom을 단순 조립하여 박스를 완성 - Tray Insert를 완성된 박스 내부에 삽입 → 최종 완제품(플라스틱 배터리 운송 박스) 완성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본 사례에서 중국산 Guide Top, Sleeve, Guide Bottom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하고 한국산 Tray Insert를 삽입하는 공정은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창출하지 않는 단순 조립공정에 해당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된 조립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며, 새로운 기능이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음
  - 따라서 완성된 플라스틱 운송박스(RC4 Ass'y)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 (19 U.S.C §1202) GN 33(o)/chapter 39』에 따라 다음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16호 내지 제39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판정 결과)**
  - 비원산지 재료인 Guide top, sleeve, Guide Bottom은 모두 제3923호에 분류되어 제39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비적용

결 론

- 한국에서의 조립은 단순공정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운송박스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되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임
- 또한, 해당 물품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불가

Case 06. 리튬이온 배터리 팩

사 례 명

- **[리튬이온 배터리 팩]**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7193(2025.04.09.)**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리튬이온 배터리 팩
	구 성	• 원통형 배터리 셀 • PCBA, 패스너, 클립, 스프링 등
	용 도	전동 공구(cordless-rotary hammers, jig saws, and impact drivers 등)에 전원 공급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리튬이온 배터리 팩은 폴란드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생산 • 사용되는 베터리 셀의 원산지*가 다르며, 조립 공정은 모두 동일 ① 중국산 셀, ② 말레이시아산 셀, ③ 한국산 셀 •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PCBA)*, 패스너, 전선, 클립, 플러그, 스프링, 라벨 등은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 미국에서 조달 *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셀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중국산임 1. 베터리 셀과 셀 홀더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음 2. 자동화 공정으로 베터리 셀을 테스트하고, 전압에 따라 분류 3. 분류된 셀을 셀 홀더에 압입하여 코어팩 형성 ※ 셀 홀더는 최종 배터리 팩의 base 기능을 함 4. 코어 팩 위에 접촉판(contact plate) 올리고 자동 저항 용접기로 접촉판을 셀에 용접 5. CMS에 퓨즈와 연선(stranded wires)을 용접하여 CMS 서브에셈블리(CMS sub assembly) 생산 6. CMS 서브어셈블리를 코어 팩에 용접한 후 연결된 셀과 정상 작동 여부 테스트 7. 테스트 후 스프링 설치, 상부 쉘(upper shell) 부착, 릴리스 스위치(release swithch) 압입 후 하우징 측면 쉘(housing's side shell)을 나사로 고정 8. 배터리 팩에 레이저 각인 후 접점(contacts)에 윤활유 도포(greasing) 9.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폴란드에서 수행된 조립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조립공정 후 배터리 셀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경되지 않음
- 배터리 셀을 플라스틱 하우징에 배치하여 배터리 팩으로 조립하는 것은 배터리 셀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음

>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563045(2004)*
> - 중국에서 일본산 리튬이온 배터리 셀에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부품들(퓨즈, 납판, 절연체 등)을 조립 용접하여 배터리 팩 생산
> - 베터리 셀을 배터리 팩으로 조립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터리 팩의 원산지는 배터리 셀의 원산지인 일본으로 판정

- 해당 건에서 배터리 셀의 기능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배터리 팩의 기능도 배터리 셀의 기능과 동일

- **(판정 결과)**
  - 배터리 셀과 완성된 배터리 팩의 기능이 동일하며 폴란드에서 조립공정 후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물품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
  - 따라서, 폴란드에서 수행된 조립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베터리 팩의 원산지는 배터리 셀이 제조된 국가에 따라 결정됨

결 론

- 폴란드에서의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완성된 배터리 팩의 원산지는 배터리 셀의 원산지 국가인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임

Case 07. 천연흑연 음극 활성 물질

사 례 명

- **[천연흑연 음극 활성 물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5393(2025.04.11.)**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천연흑연 음극 활성 물질(a natural graphite anode active material)
	구 성	• 천연흑연 원석 • pitch(수지의 일종)
	용 도	전기차에 사용될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 일부로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제조공정 1) 천연흑연 채굴 2) 흑연 입자 각각에 구형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흑연 실린더 기계에서 고속 회전 과정을 거쳐 가공 3) 한국으로 배송 2. 한국 제조공정 - A국에서 공급된 피치(수지)와 혼합된 후, 일련의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정밀한 제조 단계를 거쳐 원재료를 NG AAM(natural graphite anode active material) 최종 제품으로 변환 * 이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설정된 고온 적용 등 정밀한 물리적·화학적 힘이 결합되어 원재료를 최종 제품으로 변환 3.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기 위해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중국산 흑연 원석이 한국수행된 공정 특히 피치 코팅 공정을 통해 특성의 변화가 발생
  - 피치 코팅 공정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흑연 원석은 충전 성능(특히 충전 효율, 배터리 수명, 전반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제한적인 성능을 보여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됨
  - 한국에서 수행되는 가공 과정을 통해 중국산 소재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변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용도의 변화가 발생함

결 론

- 한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천연흑연 음극 활성 물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되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Case 08. 전기식 정수기 교체용 필터

사 례 명

- **[정수기 필터]**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7101 (2025.04.16.)**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교체용 정수기 필터 (Replacement Water Filters)
	구 성	• 한국산 카본 블록(carbon block) 필터 • 중국산 O-ring, 플라스틱 커버 등
	용 도	• 가정용 정수기 교체필터 - 납 불검출(Lead-free), 염소 및 오염물질 약 97% 제거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 8421.21.0000 • 9903.01.25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카본 블록(carbon block) 필터 제조 ※ 탄소 블록 : 흡착을 통한 오염물질 포집·제거(고도의 가공 공정 필요한 핵심부품) 2. 중국 제조공정 - O-ring 삽입 및 검사 - 접착제 도포 → 카본 블록과 중간커버 및 하부 플라스틱 커버 결합 - 회전 용접으로 밀봉 - 자체 테스트 후 라벨부착 및 최종 포장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중국에서의 접착, 용접, 압착 공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모든 부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개별 부품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상업적 물품이 만들어지지 않음
  - 교체용 정수 필터의 원산지는 그 생산에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맞춤 설비가 필요하고 해당 제품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며 필터의 정수(filtering)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블록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결 론

-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단순공정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필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블록를 생산한 한국임

Case 09. 구리 파이프

사 례 명

- **[구리 파이프]**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47190(2025.04.2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copper pipes
	구 성	이음매 없는 구리 파이프
	용 도	냉각 시스템, 일반 엔지니어링, 배관, 냉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우즈베키스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이음매 없는(seamless) 구리 파이프를 인도로 운송 2. 인도에서 냉간 인발(cold-drawing), 교정(straighten), 절단, 디버링, 세척, 검사, 포장 등의 공정 수행 • 수입 파이프 : ASTM B88 또는 ASTM B75 사양에 맞게 제조, 내경 25mm와 45mm, 외경 30mm와 50mm • 냉간 인발 공정 후 : 내경 5.02.mm~38.22mm, 외경 7.41mm~41.27mm로 줄어들고, 벽 두께 축소됨 3.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우즈베키스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산 파이프는 인도로 수입될 시점에도 파이프였고, 인도에서 가공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파이프이므로,
  - 인도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완성될 만큼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결 론

- 해당 구리 파이프의 원산지는 파이프가 제조된 우즈베키스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임

Case 10. 정수 필터 탱크 및 교체용 정수 필터

사 례 명

- **[정수 필터 탱크 및 교체용 정수 필터]**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7698(2025.05.0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 정수 필터 탱크 • 교체용 정수 필터
	구 성	• 정수기 필터 탱크 - 한국산 필터 엘리먼트(filter element) - 중국산 : 상부 챔버(chamber), 하부 챔버, 뚜껑, 수도 꼭지 • 교체용 정수 필터 : 한국과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중국에서 조립 - 필터 엘리먼트 : 중국산 O-링, 상·중·하부 커버 - 한국산 카본 블록
	용 도	• 정수 필터 탱크 : 상단 용기에 수돗물을 부으면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 • 교체용 정수 필터 : 정수 필터 탱크에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필터 엘리먼트 조립 - O-링을 상부 커버에 삽입(흠집, 얼룩, 색상 차이 유무 육안 검사) - 접착제로 중간 커버, 카본 막대, 하부 커버 접착(카본 블록이 손상없이 균일하게 접착) - 용접기로 상부 커버, 카본 막대, 섬프를 용접 및 결합하여 필터 엘리먼트 제조 - 얼룩, 균열 유무 검사 후 제품 포장 • 탱크 조립 - 발포 폴리에틸렌(EPE) 폼을 하부 챔버에 넣은 후 필터 엘리먼트 및 부속품을 EPE 위에 배치 - 누수 유무 확인 후 하부 챔버 위에 상부 챔버를 놓은 후 뚜껑 덮기 - 포장 및 밀봉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1. 정수기 필터 탱크
   - 중국에서 수행된 스테인레스강의 절곡·절단, 여러 부품의 접착, 용접, 압착 공정은 복잡하지 않고, 모든 부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개별 부품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상업적 물품이 만들어지지 않음
   -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그 생산에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맞춤 설비가 필요하고 해당 제품의 핵심 기능인 정수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블록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2. 교체용 정수 필터
   - 중국에서 수행된 접착, 용접, 압착 공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모든 부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개별 부품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상업적 물품이 만들어지지 않음
   -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그 생산에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맞춤 설비가 필요하고 필터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며 필터의 핵심기능인 정수(filtering)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블록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결 론

- 두 제품의 원산지는 해당 제품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필터를 생산한 한국임

Case 11. 전기 커플러

사 례 명

- **[전기 커플러]**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7638(2025.05.0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전기 커플러
	구 성	• 원재료 : 구리 스트립 • 완제품 : 5가지 형태의 전기 커플러(청색 열수축 버트 스플라이스 단자, 적색 암컷 퀵 커넥터, 청색 수컷 퀵 커넥터, 적색 U형 와이어 커넥터, 청색 링 와이어 커넥터)
	용 도	전기 연결 형성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 공정 - 벌크 상태의 구리 스트립(raw bulk copper strip)생산 2. 베트남 제조 공정 - 각 커플러를 적절한 크기, 직경 및 길이의 개별 블랭크에 스탬핑 - 커플러를 절단, 펀칭하여 적절한 모양으로 성형 3. 중국 제조공정 - 점 용접(spot welding), 부식 방지 코팅, 플라스틱 절연 코팅된 제품 완성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베트남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스탬핑, 절단, 펀칭, 성형)으로 한국산 구리 스트립이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이 되었다고 판단
  – 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부식방지 코팅과 플라스틱 절연체 부착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으로 볼 수 없음

결 론

- 해당 커플러는 베트남이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함

Case 12. 정맥주사 투여 세트, 정맥주사 연장 세트, 튜브 전송 세트

사 례 명

- **[정맥주사(IV) 투여 세트,정맥주사(IV) 연장 세트, 튜브 전송 세트]**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8081 (2025.05.0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an IV administration set, an IV extension set and a tube transfer set
	구 성	• (정맥주사(IV) 투여 세트) 드립챔버,롤러클램프,슬라이드클램프,Y형주입부위, 남성 루어 락(male luer lock), 주 PVC 튜브 및 보조 PVC 튜브 • (정맥주사(IV) 연장 세트) 여성 루어락(female luer lock), 남성 루어 락(male luer lock), 슬라이드 클램프 및 PVC 튜브 • (튜브 전송 세트) 남성 루어 락(male luer lock), 실리콘 튜브, PVC 튜브, 슬라이드 클램프 및 펌프 연결부
	용 도	• (정맥주사(IV) 투여 세트) 체내로 체액이나 약물을 투여하는 목적으로 사용 • (정맥주사(IV) 연장 세트) 정맥주사(IV) 투여 세트와 환자 사이를 연결하여 라인의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튜브 전송 세트) 멸균 조제 약국이나 클린룸에서 연동 펌프를 사용하여 정맥주사(IV) 체액이나 약물을 저장소(예 : 정맥주사(IV)백, 바이알, 주사기) 간에 이동시키는 데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정맥주사(IV) 투여 세트 조립 - 중국 인증 클린룸에서 의료용 한국산 주 PVC 튜브(2000mm/78.7인치)와 보조 PVC 튜브(300mm/11.8인치)를 중국산 드립 챔버, Y-사이트 그리고 루어 커넥터(luer connector)와 사이클로헥사논 용제를 사용하여 결합 - 중국산 롤러 및 슬라이드 클램프를 메인 튜브에 추가 - 제품은 누수 테스트를 거친 후 포장되고 에틸렌 옥사이드(EO)로 멸균	

제조 공정	2. 정맥 주사(IV) 연장 세트 조립 - 중국에서 한국산 PVC 튜빙을 60인치로 절단한 후, 중국산 암수 루어 커넥터와 사이클로헥사논 용매 접착을 사용하여 조립 - 중국산 클램프가 설치된 후 모든 부품은 육안 검사, 누출 테스트, 포장 및 EO 멸균 과정을 거침 3. 튜브 전송 세트 조립 - 중국 인증 클린룸에서 약 20,000mm/78.7인치 한국산 PVC 튜브와 150mm 중국산 실리콘 튜브를 검사하고 절단 - 실리콘 튜브는 두 개의 중국산 펌프 커넥터에 연결하고, PVC 튜브는 한쪽은 실리콘 튜브에, 다른 쪽은 두 개의 중국산 수지 루어락에 사이클로헥사논 용매 접착으로 연결 - 중국산 측면 클램프를 PVC 구간에 부착 - 이후 모든 부품은 누수 테스트, 검사, 포장, 그리고 EO 멸균 과정을 거침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1. 정맥주사(IV) 투여 세트
   -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은 단순 과정에 해당함. 구체적으로, 중국산 부품을 한국산 주 PVC 튜빙 및 보조 PVC 튜빙에 접합하고 결합하는 과정은 미리 절단된 튜빙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변경하지 않음
   - 또한 중국에서의 멸균 과정이 정맥주사(IV) 투여 세트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 따라서 정맥주사(IV) 투여 세트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단됨

2. 정맥주사(IV) 연장 세트

-정맥주사(IV) 투여 세트와 조립 과정은 유사하지만, 한국산 PVC 튜브가 중국에서 60인치로 절단된 후 중국 부품과 함께 조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다름

- 중국산 부품을 한국산 PVC 튜브에 절단, 접착 및 결합하는 과정은 PVC 튜브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또한 중국에서의 살균 과정 역시 정맥주사(IV) 연장 세트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따라서 정맥주사(IV) 연장 세트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결정됨

3. 튜브 전송 세트

- 한국산 PVC 튜브(2000mm)가 중국에서 절단되고 더 짧은 중국산 실리콘 튜브와 함께 검사되며, 실리콘 튜브에 중국산 부품이 부착된 후, 두 튜브가 연결되고 다른 부품이 부착되는 것으로 볼 때, 중국산 부품과 짧은 튜브를 더 긴 한국산 PVC 튜브에 절단, 접착, 연결하는 과정은 한국 튜브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변경하지 않아, 중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또한 중국에서의 멸균 과정이 튜브 전송 세트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 실리콘 세그먼트는 펌프 호환성에 중요하지만 기능상 짧고 부차적인 것이므로 튜브 전송 세트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결정됨

결 론

- 한국산 PVC 튜브를 중국에서 단순 조립, 멸균하는 과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맥주사(IV) 투여 세트, 정맥주사(IV) 연장 세트, 튜브 전송 세트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됨

Case 13. 가정용 정수 시스템 필터 카트리지

사 례 명

- **[정수기 필터 카트리지]**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8710(2025.05.1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탁상형 제빙기·워터디스펜서 등 가정용 정수 시스템 필터 카트리지
	구 성	• 한국산 카본 블록(carbon block) 필터 • 중국산 O-링, 상·중·하부 커버, 저수통(sump), 핫멜트 접착제 등 ※ 필터 엘리먼트 : O-링, 상·중·하부 커버, 저수통(sump), 핫멜트 접착제, 카본 블록으로 구성
	용 도	정용 탁상형 정수 기기(탁상 제빙기, 워터디스펜서 등)의 내부 필터로 사용되어 염소 및 오염 물질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카본 블록(carbon block) 필터 제조 ※ 카본 블록 : 흡착을 통한 오염물질 포집·제거(고도의 가공 공정 필요한 핵심부품) 2. 중국 제조공정 : (중국)한국산 필터를 납품받아 중국에서 조립(6단계 공정 수행) - O-링을 중간·상부 커버에 삽입 - 접착제로 중간 커버, 카본 블록, 하부 커버 접착(카본 블록 수직 압착 결합) - 회전 용접으로 상부 커버와 저수통 결합 - 완성된 필터 부분품 자체 테스트 - 라벨 부착 및 최종 포장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중국에서 생산된 필터는 여러 부품을 접착, 용접, 압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 모든 부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개별 부품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상업적 물품이 만들어지지 않음
  -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그 생산에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맞춤 설비가 필요하고 필터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며 필터의 핵심기능인 정수(filtering)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블록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결 론

-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단순공정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카본 필터를 생산한 한국임

Case 14. (일회용, 비멸균) 플라스틱 컵

사 례 명

- **[(일회용, 비멸균)플라스틱 컵]**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8209(2025.05.16.)**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일회용, 비멸균) 플라스틱 컵
	구 성	• 원재료 :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수지 • 원재료 출처 : 한국에서 생산 후 중국으로 벌크 수출 • 성형 방식 : 열가소성 폴리프로필렌을 가열 후, 열성형(thermoforming) 금형을 이용해 컵 형태로 제조
	용 도	음료 섭취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폴리프로필렌 수지 생산 → 벌크 형태로 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 2. 중국 제조공정 - 폴리프로필렌을 가열(열가소성 가공) - 열성형(thermoforming) 금형에 투입 → 컵 형상 성형 - 음료컵(5oz), 계량컵(1oz, 눈금 포함) 생산 - 완제품을 포장 3. 미국 : 완제품 컵 형태로 미국에서 수입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CBP에서 과거에 플라스틱을 특정한 형태로 성형하는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아래의 사례 참고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555772 (1991)*
> - 플라스틱 원재료를 성형하여 특정 제품(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제조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부여하는 공정으로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

- **(판정 결과)**
  - 한국산 폴리프로필렌 수지(HS 3902.10)가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열성형(thermoforming) 공정을 거쳐 일회용 음료컵(5oz) 및 계량컵(1oz, 눈금 포함, HS 3924.10)으로 제조됨
  - 이 과정에서 원재료는 새로운 품명(컵), 특성(액체 용기), 용도(음료 섭취·약 계량용)를 가지게 됨
  - 따라서, 중국에서 수행된 성형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됨

결 론

- 폴리프로필렌 원재료는 한국산이나, 중국에서 열성형 제조 공정을 거치며 새로운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완제품 플라스틱 컵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Case 15.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

사 례 명

-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Coil Springs)]**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48322(2025.05.20.)**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Coil Springs)
	구 성	SAE 9254 실리콘-크롬강(다양한 크기로 수입됨)
	용 도	• 자동차 서스펜션용 진동, 충격 완화 • 타이어 움직임을 유지하여 자동차 서스펜션 상태와 차량 성능에 도움을 줌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강철 봉재를 직선화, 샷블라스팅, 절단, 연마,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2. 미국에서 봉재를 980도까지 가열 후 규격에 맞게 코일로 성형 → 급속 냉각 → 열처리 및 표면처리 등을 거쳐 물리적 특성 향상 → 최종 테스트 및 도장 후 판매용 완제품 완성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잇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C.A.D. 98) (1940)*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다른 국가에서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이나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만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입된 강봉은 직선 형태로, 해당 상태에서는 스프링처럼 신축적 작동할 수 없음
  - 미국에서 코일 스프링으로 성형됨으로써 코일 구조를 갖게 되어 스프링 기능을 할 수 있게 됨
  - 미국에서의 제조 과정을 통해 강봉은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갖는 제품으로 변형됨으로 코일 스프링의 원산지는 표시 목적상 미국으로 판단됨

결 론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미국으로 판정

Case 16. 가정용 전기 정수기

사 례 명

- **[정수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8298(2025.05.21.)**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전기식 정수 디스펜서(가정용 전기 정수기-냉각/가열 기능 없음)
	구 성	• 한국산 카본 블록(carbon block), 카본 블록 막대 • 중국산 투명 물탱크, 뚜껑, 물 펌프 유닛(회로기판+배터리+정수 필터) 등 ※ 중국 제조 부품 - sump assembly : 플라스틱 중간커버, 섬프, 커버, 하단 커버, 고무 O-링으로 구성 - 워터 펌프 유닛 : 플라스틱 어댑터, 상단 커버, 하우징, 워터 노즐, 터치스크린, 솔레노이드 밸브, 주 제어 패널, 다이어프램 펌프, 실리콘 튜브, PE 튜브, 플러그, 배터리, 나사로 구성 - 탱크 및 키트 : 투명 플라스틱 물탱크, 탱크 뚜껑, 스펀지 브러시, C타입 전원 케이블, 발패드로 구성
	용 도	상단 투명 물탱크에 수돗물을 채우면, 펌프로 물을 하단으로 보내 필터를 통과시켜 정수된 물을 디스펜서의 출수구로 공급. 물 온도를 변화시키는 기능은 없음(정수 전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카본 블록(carbon block) 막대 제조 - 카본 분말, 결합체 등을 혼합 → 캔닝 기계로 성형 → 고온으로 예비소성(pre-baking) → 고온으로 압축하여 카본 블록 생산 - 카본 블록 절단 및 연마 후 부직포로 포장하여 카본 블록 막대(필터 막대) 생산 2. 중국 제조 공정 - 한국에서 생산된 카본 블록 막대와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들과 결합하여 최종 제품 생산	

제조 공정	※ 중국 생산 • 플라스틱 부품 및 구성품 : 압출 또는 사출 성형 공정으로 생산 •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 플라스틱 케이싱, 자성 전도판(magnetic conductive plate), 자성 전도체(magnetic conductor), 철심(iron core) 등을 구조 설계에 따라 조립하여 완제품 생산 • 다이어프램 펌프(diaphragm pump) : 플라스틱 케이싱, 모터, 단자 리드 등을 결합 및 조립하여 워터펌프 생산 • 주 제어 패널(main control panel) : SMT 공정으로 생산 • PCBA : 칩 커패시터, LED 램프, 칩 저항기, 단일칩 마이크로컴퓨터, 플레서블 플랫 케이블 등의 부품을 PCB에 실장 또는 결합하여 생산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해당 제품 생산에 사용된 대부분의 부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
- 또한 중국에서 수행된 SMT공정, 고무 압출, 플라스틱 사출, 조립 등의 공정은 복잡하고 의미있는 공정임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생산된 필터 막대가 해당 정수 디스펜스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긴 하나,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중국으로 수입된 구성품에 본래 존재하지 않던 고유한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상업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듦

결 론

● 중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되었으므로 최종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최종 제품은 중국산이므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임

Case 17. 유리섬유 줄자

사 례 명

- **[유리섬유 줄자]**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8790(2025.05.2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유리섬유 줄자
	구 성	• 유리섬유 테이프(fiberglass measuring tape) • 플라스틱 케이스, 손잡이(handle), 지면 고정용 말뚝(ground stake), 링 후크, 레버 드럼(lever drum), 와셔(washer), 나사(screw) 등
	용 도	거리, 길이 등 측정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73.30.51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유리섬유 테이프 생산, 인쇄, 절단 및 롤링 후 베트남으로 수출 2. 베트남에서 베트남산 부품들(플라스틱 케이스, 손잡이, 링 후크, 레버 드럼 등)과 조립 3. 베트남에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유리섬유 테이프의 원가가 완제품 원가의 50% 이상 차지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베트남에서 추가된 부품들은 유리섬유 테이프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음
  - 베트남에서 수행된 나사 조임, 고정 등의 공정은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변화시키는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유리섬유 줄자의 원산지는 유리섬유 테이프가 제조된 한국으로 판단됨

결 론

- 베트남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Case 18. 스마트 타겟

사 례 명

- **[스마트 타겟 (NateChrony SmartTarget)]**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9144(2025.06.0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스마트 타겟(NateChrony SmartTarget)
	구 성	조립 완료된 회로기판(센서 포함), 3D 프린팅 케이스(호주제조), 외부 조명 및 커넥터, 배선 등
	용 도	타겟 표적에 부착하여 히트 위치 감지 및 Wi-Fi 송신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9031.80.8085(기타 측정기 및 검사기기)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제조공정 -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 공급된 부품으로 자동화 방식으로 회로기판 제조 ※ 회로기판의 가격 비중 : 대만산 프로세서(69%), 말레이시아산 관성측정장치(16%), 그 외 중국산 및 일본산이며, 중국에서 이뤄지는 작업에는 칩 부품을 배치하는 픽앤플레이스 장치와 자동납땜 공정이 포함됨 2. 호주 제조공정 - 소프트웨어 탑재 : 완성된 보드는 호주에서 개발된 소프트 웨어가 탑재되지 않으면 작동 불가 - 호주산 재료로 3D프린팅하여 케이스 생산 - 중국산 회로기판을 케이스에 넣고 뚜겅을 나사로 고정 - 일본, 중국에서 수입된 부품을 절단 납땜, 공정을 거쳐 액세서리로 조립 - 회로기판에 액세서리 연결 - 포장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호주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은 복잡하게 평가되지 않으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회로기판은 중국에서 수입될 때 이미 모든 구성품이 완비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만 부재한 상태로서, 해당 회로기판을 케이스에 삽입하는 것은 단순 조립에 불과함
  - 본건 스마트타겟의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보드 메모리에 탑재되므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핵심 요소는 완성된 회로기판 어셈블리의 원산지로 판정하게되며, 회로기판 어셈블리는 중국산임
  - 또한, 해당 회로기판에는 가속도계 및 자이로스코프가 포함돼 측정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은 호주에서 케이스에 장착된 때에도 변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스마트타겟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

결 론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Case 19. 아기 인형 세트

사 례 명

- **[아기 인형 세트]**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49688(2025.06.1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아기 인형 세트
	구 성	• 세트 20337 : 아기인형과 액세서리(플라스틱 컵, 포크, 숟가락, 젖꼭지, 상자, 접시, 의자, 작은 플라스틱 식품, 아기 인형 의류, 수건, 포장재, 종이 인서트, 라벨 등)로 구성 • 세트 20257 : 아기인형과 액세서리(플라스틱 젖꼭지와 젖병, 포장재, 종이 인서트, 라벨 등)로 구성
	용 도	3세 미만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고안된 인형 세트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9503.00.0071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여러 국가에서 공급된 원자재로 인도네시아에서 인형의 손·다리·내부충전재 제조 2. 한국에서 공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두 인형의 머리 제작 3. 인도네시아에서 인형 몸체의 재단·봉제 및 모든 조립(머리 부착 포함) 공정 수행 4. 인도네시아에서 각 세트에 포함된 모든 액서서리 제조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735009(1993)*
> • 해당 키트는 캐나다산 구성품(식품, 의료용품, 생존 용품), 홍콩산 나침반, 미국산 호루라기로 구성
> • 여러나라에서 제조된 물품이 결합 또는 조립된 경우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로 간주
> • 키트의 구성품을 세트로 결합하는 행위는 각 구성품의 개별적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 키트의 원산지 표시 시 구성품은 Made in Canada, 나침반은 Made in Hong Kong으로 표시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물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여러 원산지의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 때, 해당 제품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부품과 부품들이 거친 제조 과정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정 결과)**

- 해당 아기 인형 세트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인도네시아에서 재단·봉제 및 모든 조립(머리 부착 포함)하는 실질적 공정을 거쳤으므로, 인형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이며, 각 세트에 포함된 모든 액세서리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므로, 전체 세트의 원산지는 두제품 모두 인도네시아임

결 론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재단·봉제 및 모든 조립(머리 부착 포함)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 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로 판정

Case 20. 특수카메라

사 례 명

- **[특수카메라]**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9742(2025.06.18.)**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스마트 계량 카메라
	구 성	주요 인쇄회로 기판 어셈블리
	용 도	자동자료처리장치(ADP) 장비의 CPU에 장착되어 열 방출 및 냉각 기능 수행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528.89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SMT(표면실장기술)공정을 통해 메인 기판(PCBA) 제작 - 플래시 연성회로 기판(FPC) 및 컴팩트 카메라 모듈(CCM)을 메인 기판(PCBA)에 장착 - 프로그래밍과 테스트 후 중국 수출 * 이 단계까지 완료하면, 카메라 모듈은 이미지 캡처·변환할 수 있는 완제품 기능을 가짐 2. 중국 제조공정 - 샤시와 전면 하우징 결합 - 배터리를 메인 보드에 연결 - 기능 확인 테스트 - 제품 포장 후 출하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다양한 원산지를 가진 부품들이 최종 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사용된 부품의 종류, ② 그 부품들이 거치는 제조 과정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
  - 단일 요소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조립(minimal assembly)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판정 결과)**
  - 이미지 캡쳐와 변환기능 등 완제품의 주요 기능이 한국에서의 공정인 메인기판(PCBA)제작, 카메라 모듈(CCM) 및 플래시 연성회로 기판(FPC)의 결합으로 발생되며,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은 수출 상품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롭고 다른 상품으로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됨

결 론

-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되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21. 혈당 측정기

사 례 명

- **[혈당 측정기]**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50041 (2025.06.23.)**

사 실 관 계

<table>
<tr><td rowspan="6">제 품</td><td>제 품 명</td><td>혈당 측정기(Atlas CGM Reader)</td></tr>
<tr><td>구 성</td><td>• 전체 부품은 총 228개 이며, 주요 구성은 인쇄회로기판(PCB)임
〈 부품 및 원산지 비중〉
<table>
<tr><th>생산국가</th><th>부품명</th><th>비중(가치기준)</th></tr>
<tr><td>중국</td><td>액정 디스플레이, 배터리, 베어PCB, 진동 모터</td><td>41%</td></tr>
<tr><td>대만</td><td>플래시 메모리</td><td>10%</td></tr>
<tr><td>태국</td><td>트랜시버</td><td>5%</td></tr>
<tr><td>싱가포르</td><td>플라스틱 구성품</td><td>4%</td></tr>
<tr><td>일본</td><td>기타</td><td>3%</td></tr>
<tr><td>베트남</td><td>기타</td><td>2%</td></tr>
<tr><td>필리핀, 한국, 말레이시아</td><td>기타</td><td>3%(각1%)</td></tr>
<tr><td>위 언급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중 조달</td><td>커패시터, 저항기, 인덕터, 다이오드 및 기타 전자 부품</td><td>32%</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00%</td></tr>
</table></td></tr>
<tr><td>용 도</td><td>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 혈당 모니터링</td></tr>
<tr><td>원 재 료
HTSUS</td><td></td></tr>
<tr><td>완 제 품
HTSUS</td><td></td></tr>
</table>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CGM Reader의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설계 투자는 모두 미국에서 수행 1. 싱가포르 또는 말레이시아 제조 공정 : 플래시 메모리 칩 프로그래밍 - 미국산 CGM Reader 소프트웨어를 개별 플래시 메모리 칩에 로드하고 확인 - 프로그래밍된 플래시 메모리 칩을 추가 처리하기 위해 다음 스테이션으로 전송 2. 말레이시아 제조공정 1) PCBA 표면 실장 기술(SMT) 공정 - 베어 PCB에 솔더 페이스트 도포 - 도포 완료한 PCB에 스테이션 1에서 프로그래밍된 플래시 메모리 칩과 저항기, 커패시터, 집적 회로와 같은 다른 전자부품 배치 - PCB에 납땜하여 부착하고, PCB 내부 구리선을 통해 서로 연결시킴 2) PCBA 프로그래밍 및 기능 테스트 -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일부인 미국산 CGM Reader 애플리케이션을 플래시 메모리에 로드 - PCBA에 칩 설치, 프로그래밍 적정 여부 확인 후, 기능 테스트 수행 3) CGM Reader 조립 - 기능 테스트를 완료한 PCBA는 상단 및 하단 하우징 내부에 배치되어 결합 - 초음파 용접기를 통해 CGM Reader 조립 공정 완료 4) CGM Reader 기능 최종 테스트 - 버튼, LCD 디스플레이, 스피커, 진동 모터, USB 포트 등 하드웨어상 주요 기능 검증 - 플라스틱 하우징 용접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싱가포르로 운송 - 이 단계에서 CGM Reader는 모든 필수 구성요소가 갖추어진 상태이나, 환자의 혈당 센서에 연결하거나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로 기능하지 못함 3. 싱가포르 제조공정 : CGM Reader 의료기기 구성 - CGM Reader가 환자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혈당 수치를 제공하며, 의료기기로 기능하도록 구성 - 제품 뒷면 라벨 부착, 플래시 메모리에 구성 설정 로드, 혈당 알람, 측정 단위, 언어 등 주요기기 매개변수 구성 - 소프트웨어 버전 적정성 확인, 이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플래그 삭제, CGM Reader를 최대 절전 모드로 설정 - 본 구성이 완료되면, CGM Reader가 환자 팔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해석 및 실시간 표시, 이력 수집을 통한 추세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게 됨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잇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참고 판정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C.A.D. 98)(1940)*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다른 국가에서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이나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 만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

- **(판정 결과)**
  - Atlas CGM Reader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개별 부품을 베어 인쇄회로 기판에 납땜하여 PCBA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들이 상당한 변형을 거쳐 말레이시아산 PCBA가 생산됨
  - 말레이시아에서 나머지 부품을 추가하면 최종 구성은 없지만 완제품 판독기 생산이 거의 완료되며, 혈당 측정기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최종 구성은 싱가포르에서 완료되나, 말레이시아에서 출고된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결 론

- Atlas CGM Reader는 미국으로 수입될 당시 말레이시아산 제품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

Case 22. 하드라인 케이블

사 례 명

- **[하드라인 케이블]**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50106(2025.06.2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hardline digital cable(모델번호 : PPC625EFRF)
	구 성	• 절연체로 감싸진 구리 도금 알루미늄 도체와 내부 실드 및 플라스틱 외피 (보호 재킷)으로 구성됨 • 케이블은 릴 단위로 수입되며, 양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
	용 도	야외 설치와 같이 고강도 케이블이 필요한 장거리 디지털 통신 신호 전송에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또는 미국산 구리 도금 알루미늄 도체를 중국으로 수입 2. 중국 제조공정 - 도체 위에 내부 절연체가 압출되어 절연 코어 생산 - 알루미늄 차폐가 코어 주위에 형성된 후 플라스틱 외피를 추가하여 완제품 케이블 완성 - 완성된 케이블을 릴에 감음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구리 도금 알루미늄 도체(core)가 완제품의 특성을 결정함
  - 절연체, 쉴딩, 외피를 추가하는 과정(jacketing)은 도체를 새로운 상업용 제품으로 본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님
  - 따라서 하드라인 케이블의 원산지는 도체의 원산지 국가인 한국 또는 미국이 됨

결 론

- 중국에서의 제조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도체의 원산지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으로 판정됨

Case 23. LED 조명 기구

사 례 명

- **[LED 조명기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50325(2025.06.2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LED 조명
	구 성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하우징 내부에 장착된 일체형 LED 드라이버, 복수의 LED 모듈(광원) 정밀 광학 장치
	용 도	대규모 스포츠 시설용 조명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 공정(LED PCB SMD(Surface Mount Device) 모듈(the light sources) 생산) 1) 중국, 베트남,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자재 및 부품 공급받은 후 입고 품질검사 실시 2) 솔더페이스트(solder paste)를 금속 PCB(bare PCB)위에 도포 3) LED 칩, 쉴드 캔(shield can), 커넥터를 금속 PCB의 솔더페이스트가 도포된 부분에 배치 4) SMT공정을 하기 위해 PCB를 리플로우 솔더링 장비에 적재 5) 완성된 LED PCB 모듈에 DC 전원 공급 장치로 전원을 공급하여 LED 점등 확인 6) 출고 품질 관리 후 베트남 공장으로 출하 2. 베트남 제조 공정(최종 제품 생산) 1) PTX(Plate Thermal Exchanger, 판형 열교환기) 를 메인 하우징 캐스팅에 압입 2) 다양한 핑거 가이드(finger guides) 조립 3) 메인 하우징 보드 전착도장(electrodeposition coating)* 처리 * 전기 화학 반응을 활용해 금속 표면에 도료를 균일하게 입히는 방식 4) LED PCB SMD 모듈을 써멀 구리스(thermal grease)를 사용하여 부착 5) LED PCB를 케이블 글랜드로 연결하고 점등 확인 6) inner 바이저 A와 B를 조립 후 그 사이에 렌즈를 넣고 나사로 고정	

제조 공정	7) 모든 나사를 조인 후 유리에 개스킷을 부착 8) 개스킷이 부착된 유리를 하우징 위에 놓고 덮개를 덮어 나사로 고정 9) 완성된 부품과 서브어셈블리를 조립라인으로 이동 최종조립 수행 -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 메인 하우징에 조립 - SPD를 메인 하우징에 조립하고 WAGO를 사용하여 SMP 입력 케이블에 연결 -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SMPS 제조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전류 설정 구성 - 전류 설정이 완료되면, 접합 커버 개스킷(junction cover gasket)과 커버를 고정 - 최종 출력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테스트 결과 출력 - 테스트 합격 제품은 LED light 모듈과 조립 - 최종 성능 테스트 3.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LED가 장착된 한국산 PCB는 LED 조명의 광원(light source)이며,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임
- 한국산 PCB는 베트남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최종 용도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조립공정 후에도 용도가 변경되지 않음
-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조립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잇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참고 판정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판정 결과)**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의 판정 결과와 동일

결 론

● 베트남에서의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상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

Case 24. 모니터

사 례 명

- **[모니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49992(2025.07.03.)**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모니터(부품번호 : 791.0BC02.0001)
	구 성	• LCD 패널 • 인터페이스 보드, 조이스틱 보드, USB 보드 • 저전압 차동 신호, 타이밍 제어 장치 • 스케일러 유닛, 드라이버 보드, 전원 보드
	용 도	DisplayPort, HDMI, VGA 단자를 통한 영상 연결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시나리오 1 1. 베트남 제조 공정 : 표면 실장 기술(SMT) 및 이중 인라인 패키지(DIP) 공정을 통해 3가지 PCBA (① 인터페이스 보드, ② 조이스틱 보드 ③ USB 보드) 조립 1) SMT 공정을 통해 인터페이스 보드에 저전압차동신호(LVDS) 추가 * 박막 트랜지스터(TFT) 패널 제어 2) SMT 공정을 통해 저전합차동신호(LVDS), 타이밍 제어 유닛, 자동 데이터 처리(ADP) 및 영상 신호를 변환·처리하는 대만산 스케일러 유닛을 인터페이스 보드에 조립 3) 드라이버 보드는 SMT 및 DIP 공정을 통해 파워보드와 결합 4) 3가지 PCBA를 조립한 후 중국으로 운송 2. 중국 제조 공정 - 최종 조립(끼우기, 눌러 고정하기, 삽입, 누르기 부착 등) * LCD 패널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중국에서 제조	

제조 공정	• 시나리오 2 1. 한국에서 LCD 패널 생산 → 중국으로 운송 2. 중국 제조 공정 1) SMT 및 DIP 공정을 통해 인터페이스 보드, 조이스틱 보드, USB 보드, 드라이버 보드, 전원보드 등 모든 PCBA 제조 2)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한국산 LCD패널 조립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T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PCBA는 모니터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인 화면 표시용 이미지 형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장치의 주된 특성을 부여함. 따라서 모니터의 원산지는 기본 PCBA가 생산된 국가임
- 이 경우 PCBA는 시나리오에 따라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제조됨
- 시나리오1 관련,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PCBA를 수출 품목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본 모니터의 원산지는 시나리오 1에서는 베트남, 시나리오 2에서는 중국으로 판단됨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잇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참고 판정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판정 결과)**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의 판정 결과와 동일

결 론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PCBA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로, 시나리오 1은 베트남, 시나리오 2는 중국으로 판단됨

Case 25. 세탁기/건조기용 조명

사 례 명

- **[세탁기/건조기용 조명(Tub Light)]**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50085(2025.07.08.)**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Tub Light(308D1661P001, 일명 : 튜브 라이트)
	구 성	PCBA, 렌즈, 램프 베이스, PVC 실링, O링 및 하네스(모두 중국산)
	용 도	세탁기·건조기 내부 조명(도어 개폐시 점멸)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제조공정 - 중국에서 SMT 공정을 통해 PCBA 제조 후 태국으로 수출 ※ 한국산 LED 내장 2. 태국 제조공정 : 대부분의 공정은 부품을 조립하는 것임 - 렌즈와 O링 결합 - PCBA를 램프베이스에 조립 - 배선(하네스) 연결, 플러그 결합 - 전체 부품 씰링 - 기능 테스트 및 출하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중국산 부품들을 태국으로 수입한 뒤 조립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되지만, 조립 작업에서 부품들의 물리적 변형이나 본질적 특성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음. 특히, LED가 부착된 PCBA와 같은 부품들은 태국 수입 시점에 이미 완제품(튜브 라이트)의 부품으로서 설치될 최종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태국 내 조립 공정에서도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음
  - 이처럼, 태국에서의 튜브 라이트 조립 공정은 충분히 복잡하거나 의미 있는 공정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별개의 상업적 물품으로 창출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건 범용 튜브 라이트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

결 론

- 태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Case 26. 반려동물용 물티슈

사 례 명

- **[반려동물용 물티슈]**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50571 (2025.07.15.)**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반려동물용 물티슈
	구 성	농축 세정액, 부직포
	용 도	반려동물용 일회용 위생용품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3401.19.0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표면활성제 및 기타 성분을 포함한 농축 세정액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농축 세정액을 희석하여 부직포에 침투시켜 소매용으로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참고 판례 :** *T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한국산 농축 세정액이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세정제 희석, 부직포에 세정제 함침, 포장 공정은 한국산 농축 세정액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세정액의 원산지인 한국임

결 론

- 중국에서 수행된 희석, 함침, 절단, 포장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

Case 27. 스퍼터링 타겟

사 례 명

- **[스퍼터링 타겟(Aluminum Sputtering Target)]**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51335(2025.07.28.)**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Aluminum Sputtering Target(일명 : 스퍼터링 타겟)
	구 성	알루미늄 또는 구리 합금 백플레이트, 알루미늄 디스크, 연결부로 구성
	용 도	물리증기증착(PVD) 장비 내 음극으로서 반도체 등의 제품 표면에 얇은 박막 형성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알루미늄을 주조하여 롤 형태로 만든 뒤, 특정 디스크 모양으로 절단 2. 압연, 소둔, 단조 과정을 포함한 열기계적 공정 수행하여 타깃 제조 3. 이후 공정은 시나리오별로 아래와 같음 - 시나리오 1 : 알루미늄 또는 구리 합금 백플레이트가 중국에서 타깃 후면에 결합된 뒤, 반가공된 타깃이 한국으로 운송되고 한국에서 가장자리 절단, 검사, 시험, 세척 등 공정 수행 - 시나리오 2 : 열기계적 공정을 마친 타깃이 한국으로 운송되어, 백플레이트 결합 공정이 한국에서 수행되며, 이후 공정은 시나리오 1과 동일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중국에서 수행된 주조 및 열기계적 공정이 해당 품목에 원하는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백플레이트는 중국이나 한국 어디에서 결합되더라도 타깃의 구조적 기반 및 열 방산을 제공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타깃의 본질적 기능적 구성 요소는 아님
  - 이에 따라, 타깃의 물리적 특성은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에 의해 부여되므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모두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결 론

-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최종 제품에 본질을 형성하는 기능이 부여된 중국임

Case 28. 아기용 물티슈

사 례 명

- **[아기용 물티슈]**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51552(2025.08.12.)**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아기용 물티슈
	구 성	• 농축 액상 비누 - 물, 글리세린, 벤조산나트륨, 구연산, 카프릴릴글리콜, 데실 글루코사이드의 특정 비율로 구성 • 부직포
	용 도	아기용 일회용 위생용품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한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및 중국산 원재료로 농축 액상 비누를 생산. - 중국 수출 2. 중국 제조 공정 - 농축액상비누를 물로 희석시키고 소량의 구연산으로 PH조정(화학적 반응 발생하지 않음) - 희석된 용액을 부직포에 함침 - 절단 및 포장 3.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명칭(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한국에서 제조된 액상 비누이며, 부직포는 단순히 이를 담는 운반체 역할을 담당함.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희석, 함침, 절단, 포장 등의 공정은 한국산 농축 액상 비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농축 액상 비누의 원산지인 한국임

결 론

- 중국에서 수행된 희석, 함침, 절단, 포장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

Case 29. 유체 단

사 례 명

- **[유체 단]**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51810(2025.08.2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유체 단(Fluid Ends)
	구 성	철강 블록
	용 도	수압 파쇄 및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사용되는 피스톤 펌프 구성 요소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시나리오 1 1. 중국 제조공정 - 용해(smelting), 일렉트로 슬래그 재용해(electroslag remelting), 단조 공정을 통해 직사각형 블록 제작 → 한국 수출 2. 한국 제조공정 - 철강 블록 단조품의 외면 형상을 다듬고 실린더 드릴링 - 열처리, 밀링, 보링 공정을 거쳐 설계와 사양에 맞춘 완제품 형태로 완성 ※ 완제품 형태의 블록은 유체 단의 하우징 역할을 함 - 최종 조립 : 중국에서 조달되는 부품들을 완성된 블록에 설치하는 공정 1) 다양한 씰의 밀봉 표면에 그리스 도포, 이후 씰을 해당 홈에 설치 2) 다양한 밸브 삽입, 툴링을 사용하여 밸브 인서트를 밸브 본체에 압입하는 공정 3) 배출 플랜지, 플랜지 티, 오링을 조립하여 설치 4) 다양한 상부 및 하부 밸브 조립 5) 그리스를 도포한 후 스프링, 스프링 시트, 스피곳 삽입 6) 순서대로 패킹 세트, 정크 링, 스페이서 링 설치. 제자리에 조인 후 플런저 설치. 7) 마지막으로, 플랜지와 플랜지 티를 유체 단부에 부착 8) 완성된 유체 단부를 각각 도장, 테스트 및 포장	

제조 공정	• 시나리오 2 1. 한국 제조공정 - 용해, 일렉트로슬래그 재용해, 단조, 황삭 가공(rough machining) 2. 중국 제조공정 - 블록의 최종 가공 및 조립 공정(시나리오 1에서 언급한 공정과 동일)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해당 제품의 경우, 최종 조립 공정은 다소 간단하며 실질적인 변형을 구성하지 않음
- 하우징에 부품을 삽입하고 압착하는 작업은 투입재료의 형태, 특성 또는 사전에 결정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음
- 그러므로 상품의 핵심구성요소인 유체 단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우징의 원산지를 판단해 봄
- 하우징은 가압공정에 기여하고 내부 부품들을 보호하며 완제품 가치의 90%를 차지함
- 그러므로 시나리오 1의 경우 하우징의 원산지가 한국이므로 유체 단의 원산지는 한국임. 시나리의 2의 경우 블록이 중국에서 특수 하우징으로 변경되므로 하우징의 원산지는 중국이고, 유체 단의 원산지도 중국임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잇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 참고 판정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판정 결과)**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의 판정 결과와 동일

결 론

● CBP는 제조 공정이 실질적인 변형 수준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여부를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판정하므로, 본 유체 단의 원산지는 하우징의 원산지(시나리오 1의 경우에 한국, 시나리오 2의 경우에 중국)로 판정함

Case 30.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사 례 명

-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NY N352562(2025.09.0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 automotive air filter(자동차 공기 필터) (모델명 : WT215057TH-3, WT211166TH-2)
	구 성	• 필터 매체 (filter media) : 한국산 • 접착제, 금속망, 폴리에테르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등 : 중국산 • 필터 요소 일부, 목재 팔레트, 포장재 일부 : 태국산 → WT215057TH-3, WT211166TH-2 물품은 각각 원통형과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필터 재료를 고정하는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 형태로 구성
	용 도	자동차 HVAC 시스템(난방,환기,공조 시스템)의 구성품으로 공기 정화 기능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태국 상세 공정] 1. 한국 및 중국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2. 태국 제조 공정(총 17단계) - 한국산 필터 매체 주름 처리, 습윤, 절단 및 기타 필터 성형 공정 등을 수행 3.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산 필터 매체가 완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태국에서 이러한 필터 매체를 주름 처리하는 등의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공정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지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필터 매체가 제조된 한국임

결 론

-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

부 록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146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149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① CBP Advance Ruling 신청 홈페이지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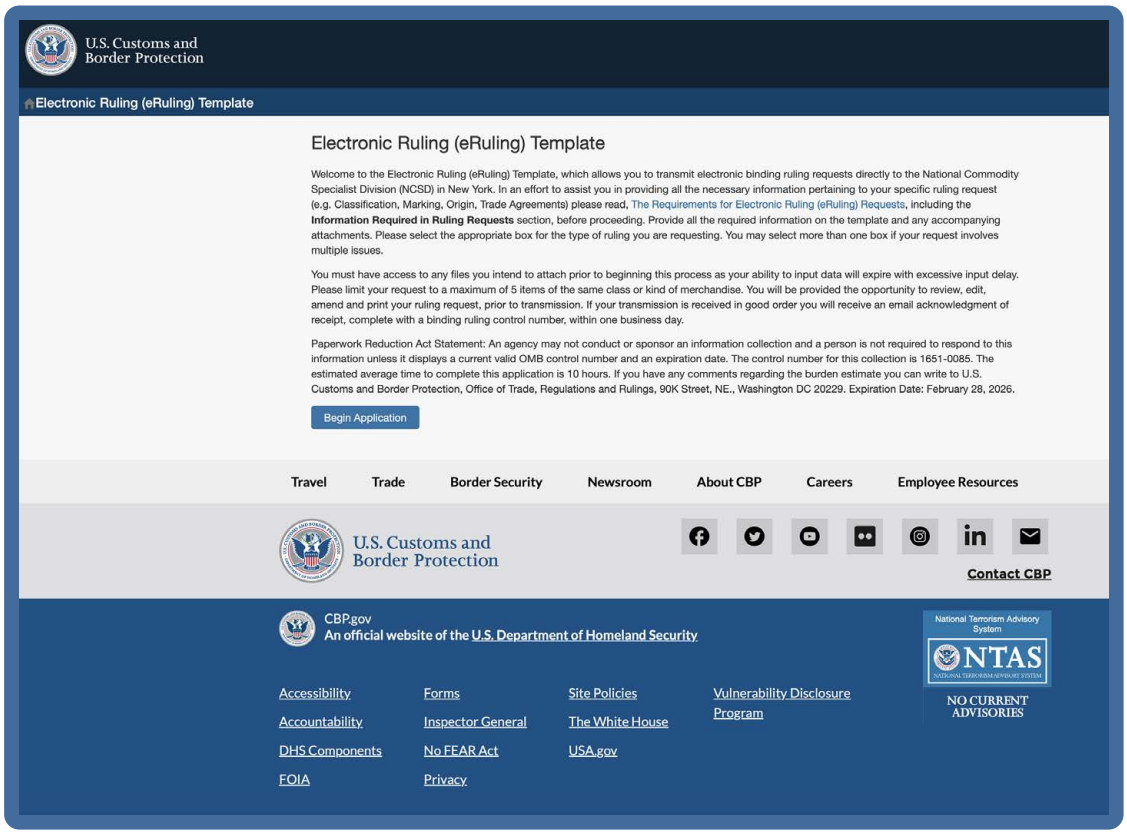

http://erulings.cbp.gov

② 신청인 정보 작성

Ruling Requester Information

* First Name: 이름
Middle Name(or initial):
* Last Name: 성
Title:
* Company Name: 회사명
* Address 1: 주소
Address 2:
* City: 도시
* State: 주 N/A선택
* Zip/Postal Code: 우편번호
* Country: Korea, South
* Phone: 전화번호
* Email Address: Email 주소
* Retype Email Address: Email 주소 재입력(확인)

③ 결정 유형 선택

Request Type 결정 유형 선택(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원산지, FTA 적용)

*Select Request Type (check all that apply)

Please select at least one request type

- [ ] Classification
- [ ] Marking
- [x] Country of Origin
- [ ] Application of Trade Program or Trade Agreement

④ 신청서 작성

Questions

Question 1 대리인 제출 여부

Is this request being filed on behalf of a client?

Yes No

If yes, please st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ient.

Client Company

Address 1

Address 2

City

State: Select N/A if not applica...

Zip/Postal Code: Type N/A if not a

Country: Select an Option

Question 2 미국 AEO 취득 기업 해당 여부

Is your company a Trade Compliance Partner? (You must have a sign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CBP). The following link provides further information on the Trade Compliance Partner program: https://www.cbp.gov/document/faqs/ctpat-trade-compliance-program-faqs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the Importer of Record Number.

Importer of Record Number

Question 3 신청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CBP 또는 미국 법원의 쟁송 진행 여부

To your knowledge are there any issues or requests for advice, concerning this commodity, pending before any CBP office or any Court?

Yes No

Explain the issue or advice request pending; state before which CBP office or Court it is pending, and what advice was rendered, if any.
For example, have you received CBP forms 28 or 29 on the issue or item presented before this office?

Explanation

Question 4 **신청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CBP Ruling 신청 이력 여부**

Is this a resubmission of a previous ruling request which required additional information?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the previous ruling number.

Previous Ruling #

Question 5 **신청물품에 대한 Sample 제출 여부**

Is a sample being submitted?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the tracking number.

Tracking Number

If yes, would you like the sample to be returned?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the return label.

Return Label

Question 6 **신청물품의 원산지**

If available, w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imported product?

Country

Select an Option

⑤ 신청 상세사유 작성

Description **신청 상세사유 작성(거래설명, 산업정보 포함)**

Text of Ruling Request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transaction; for example, a prospective importation of merchandise X from country A). For classification requests, include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such as a full and complete description of the article, principal use, commercial or technical designation, relative quantity by weight of each component, illustrative literature, photographs, chemical analysis, flow charts, CAS number, and any other information that may assist in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Limit to 5 items or less of the same class or kind.**

* Overview of Issue / General Description

0/4000

WHEN SUBMITTING YOUR RULING REQUEST, PLEASE BE SURE TO INCLUDE THE SUGGESTED INFORMATION FOR YOUR RESPECTIVE COMMODITY PER INDUSTRY. CLICK **VIEW INDUSTRIES (OPTIONAL)** TO VIEW REQUIREMENTS.

Add First Item Description

⑥ 첨부자료 제출(물품 설명자료)

Attachments **첨부자료 제출(물품사진, 카달로그, 제조공정도 등 설명자료)**

NOTE: You can attach multiple files. The files sizes cannot add up to more than 25 MB.

Use the Attach button below to select and attach document files on your computer that support your ruling request. Acceptable file formats are: Microsoft Word (.doc, .docx), Microsoft Excel (.xls, .xlsx), Microsoft Power Point (.ppt, .pptx), Acrobat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text file (.txt), JPEG image format (.jpg, .jpeg), GIF image format (.gif), Windows bitmap (.bmp),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and MP4 (.mp4).

To add attachment

1. Click on the Attach button below.
2. Browse to find the file(s) you want to attach.

Select the file(s), and then select Open to attach the files to your request.

If you have already added an attachment and decided to remove it, select the red discard button (X) next to the attachment name.

Upload Files Or drop files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CBP CROSS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조회

- 검색(search)란에 품명 또는 세번 입력 후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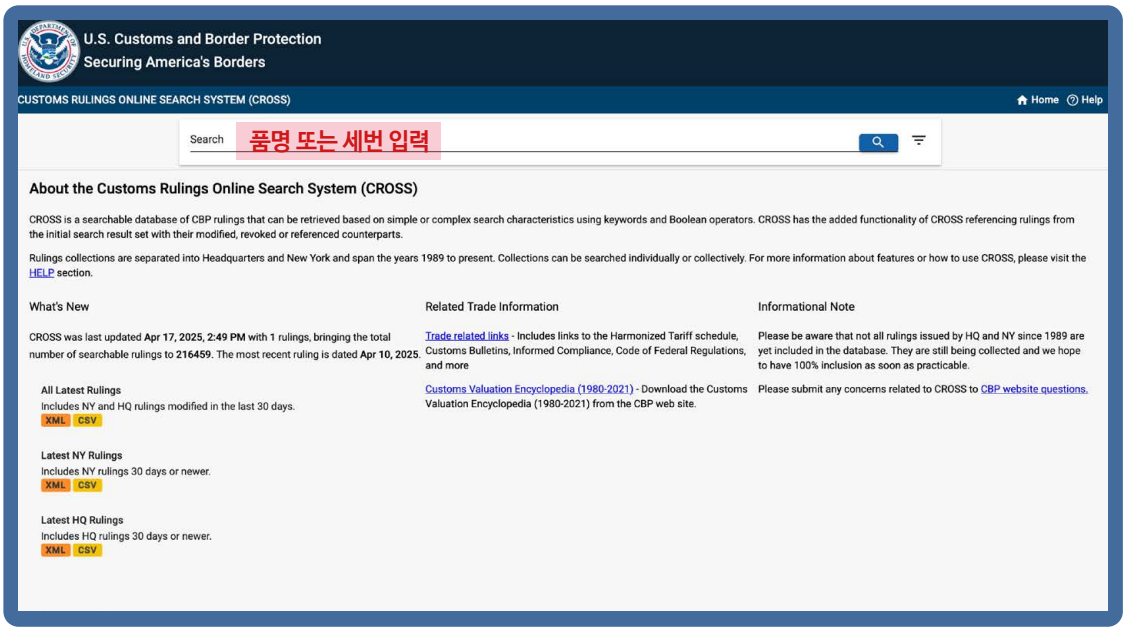

http://rulings.cbp.gov/home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

발 행 일	2025년 10월
발 행 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총 괄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임주연
집 필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박귀숙, 김성미 서울세관 김정엽, 유소미 부산세관 조민경 인천세관 조현지 대구세관 정희선 광주세관 김은아, 김경하 평택직할세관 정진영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송경은, 권민경, 김민준, 박현혁, 김혜량
디자인/인쇄	플러스 원

관세청의 승인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